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Examination Progress and Highlights of the 2024 Tax Act Revision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총 괄 | 상 지 원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 조정 | 심 혜 정 조세분석심의관
박 연 서 세제분석1과장
백 경 엽 세제분석2과장

작 성 | 김 효 경, 강 민 지, 신 홍 철, 박 지 원
이 정 훈, 박 성 은, 장 설 희, 최 천 규
박 정 환, 신 미 정, 태 정 림 추계세제분석관

지원 · 편집 | 이 지 은 행정실무원
김 서 현 자료분석연구원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 02) 6788-4744 | income411@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4. 1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4.12.19.)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11월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로 시작되어 12월 10일 본회의에서는 국세 관련 세법 13건이, 12월 26일 본회의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법 5건이 심의·의결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4년 세법의 심의과정과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2025년부터 시행될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Ⅰ장에서는 국회 세법개정의 경과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세수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세법에 대한 국회의 심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Ⅱ장에서는 주요 개정 항목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점 논의사항 등을 정리하였으며, Ⅲ장에서는 개정된 세법에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개진되었던 항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세법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일러두기

1. ‘소득세’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개정 항목임
2. ‘법인세’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개정 항목임
3. ‘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개정 항목임
4. ‘기타’는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항목임
5. ‘지방세’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분야 법률 개정 항목임
6. 다음 법률명에 대해서는 괄호 안의 약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음
   국세기본법(국기법), 부가가치세법(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개소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교통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또는 국조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법)
7.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의원안’으로, 개별안건은 ‘대표발의자명+의원안’으로 표기함
8. 본 보고서의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24년도) 대비 증감한 누적세수를 합산한 방식인 누적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금액임
9. 개정연혁은 개정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10. 본 보고서의 ‘현행’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하며,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함

차 례

I. 개 관 / 1

1. 2024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 3
2. 심의 경과 ····· 7
   - 가. 위원회 심사 ····· 7
   - 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 11
   - 다. 본회의 심의·의결 ····· 14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심의 쟁점 ····· 18
   - 가. 개정세법 주요 내용 ····· 18
   - 나. 개정세법 주요 심의 쟁점 ····· 27
4.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및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 36
   - 가.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 36
   - 나.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 37
5.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 38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 43

1. 소득세제(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 44
   - 가. 총괄 ····· 44
   - 나. 주요 논의사항 ····· 45
2. 법인세제(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 67
   - 가. 총괄 ····· 67
   - 나. 주요 논의사항 ····· 69
3.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등) ····· 87
   - 가. 총괄 ····· 87
   - 나. 주요 논의사항 ····· 88

차 례

4. 기타 세제(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 102
가. 총괄 ····· 102
나. 주요 논의사항 ····· 102
5. 지방세제(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 110
가. 총괄 ····· 110
나. 주요 논의사항 ····· 111

III. 심사대상 중 개정세법 미반영 항목 및 논의내용 / 123

1. 정부제출안 중 개정세법 미반영 항목 ····· 124
가.「조세특례제한법」미반영 항목 ····· 124
나.「부가가치세법」미반영 항목 ····· 127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미반영 항목 ····· 127
2. 의원발의안 중 개정세법 미반영 항목 ····· 130

부 록 - 확정된 2025년 총수입 예산 및 변경 내용 / 135

표·그림 차례

〈표 차례〉

[표 1] 2024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3
[표 2] 기획재정위원회 국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 8
[표 3]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 9
[표 4] 법제사법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 10
[표 5]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신청 현황 및 지정 결과 ····· 11
[표 6] 2024년 국세 법률안 관련 본회의(12. 10.) 찬반토론의 주요 내용 ····· 14
[표 7] 2024년 국세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 결과 ····· 16
[표 8] 2024년 지방세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 결과 ····· 17
[표 9]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18
[표 10] 가상자산 양도 ·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18
[표 11]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19
[표 12] 결혼세액공제 개정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19
[표 13]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19
[표 1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0
[표 1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0
[표 16]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의 중간예납 산출방식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0
[표 17]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1
[표 18]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1
[표 19]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2
[표 20]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2
[표 21]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인상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3
[표 22]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3
[표 2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3
[표 24]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4
[표 25] 수소제조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4
[표 26]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적용기한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5

표·그림 차례

[표 27]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대상 확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5
[표 28]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6
[표 29]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28
[표 3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 29
[표 31]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30
[표 32] 가상자산 양도 · 대여 소득과세 유예 관련 주요 심사 의견 ····· 30
[표 33] 결혼세액공제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31
[표 34] 결혼세액공제 관련 주요 심사 의견 ····· 32
[표 35]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32
[표 36]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관련 주요 심사 의견 ····· 33
[표 37]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 34
[표 38]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한도 축소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35
[표 39]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한도 축소 관련 주요 심사 의견 ····· 35
[표 40] 국회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 36
[표 41]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여 개정세법에 반영된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 37
[표 42]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5~2029년 ····· 38
[표 43]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 39
[표 44]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내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 40
[표 45] 증권거래세율 변화 ····· 45
[표 46]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47
[표 47]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49
[표 48] 결혼세액공제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51
[표 49] 자녀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53

표·그림 차례

[표 50]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55
[표 5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추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57
[표 52] 소득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 58
[표 53]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주요 연혁 ····· 70
[표 54]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인상, 점감구조 도입,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72
[표 55]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확대 연혁 ····· 74
[표 56]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확대 및 적용기한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75
[표 5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76
[표 5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77
[표 59]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의 중간예납 산출방식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78
[표 60]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79
[표 61] 법인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 80
[표 62]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89
[표 63]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특례 개정 연혁 ····· 90
[표 64]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한도 축소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91
[표 65] 수소제조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92
[표 66]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정 연혁 ····· 93
[표 67]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93
[표 68]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95
[표 69] 소비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 96
[표 70]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보완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03
[표 71]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사유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04
[표 72] 미수령 환급금 기준 상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05

표·그림 차례

[표 73] 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06
[표 74] 기타 세제 개정 내용 총괄표 ····· 107
[표 75]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과 감면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12
[표 76] 전기 · 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14
[표 77] 경형 승용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15
[표 78] 귀농인 취득세 감면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16
[표 79]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17
[표 80] 지방세제 분야 개정 주요 내용 총괄표 ····· 118

표·그림 차례

〈그림 차례〉

[그림 1] R&D 세액공제 공제율의 점감구조 확대 관련 개정 내용 ····· 33
[그림 2]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전환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의 점감구조 도입 ··· 69
[그림 3]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전환 시 R&D 세액공제 공제율의 점감구조 확대 ····· 73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I
개 관

1 2024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 2024년 정기회에서 심의[1]된 국세 관련 세법은 총 20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292건(기획재정위원회)

○ 심의대상 세법(20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탄소세법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심의대상 법률안(292건)

- 정부안 15건, 의원안 277건[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46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 등

□ 2024년 임시회에서 심의된 지방세 관련 세법은 총 5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127건(행정안전위원회)

○ 심의대상 세법(5개)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교부세법」

○ 심의대상 법률안(127건)

- 정부안 4건, 의원안 123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1건 등

---

1) 심의(審議)의 사전적 의미는 '심사(審査)하고 토의(討議)함'으로, 국회법은 본회의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심의'(제93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심사'(제58조)라는 용어를 사용함(임종훈 · 이정은,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21.)

2) 이하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 전체는 "의원안", 개별 안건은 "대표발의자명+의원안"으로 표기

[표 1] 2024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률안 (건수)	주요 내용
「소득세법」 (61건)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박대출의원안, 정부안) 또는 보완(임광현·정태호·차규근의원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정부안)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정일영·정성호·윤호중·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액 상향조정(신영대·서영교·정일영·송언석의원안) - 결혼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설(박정하·안도걸·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신영대·윤준병·안도걸·김민전·윤호중·송언석·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확대(서영교·박성준·정일영·박정·안도걸·박수민·조정훈·윤호중·임광현의원안) -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제도 신설(서영교·안도걸·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정부안)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정태호·천하람의원안, 정부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세제지원 강화(정태호·박수영의원안, 정부안) -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송언석의원안, 정부안) 및 제도 보완(정태호의원안, 정부안)
「법인세법」 (8건)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 신탁의 수탁자 과세 예외 추가(정부안)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안도걸의원안, 정부안) - 본점·주사무소의 소재 지역에 따른 차등 법인세율 적용(윤영석·구자근의원안) - 법인세 중간예납 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 중간결산 기준 계산 의무화(안도걸의원안, 정부안)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및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안도걸의원안, 정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25건)	- 상속세·증여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엄태영·권성동의원안, 정부안) - 상속공제 확대(김은혜·최은석·임광현·안도걸·권성동·송언석의원안, 정부안)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허용 범위 및 증여세액 공제 예외 사유 정비(김은혜·임광현·안도걸·권성동·송언석의원안) -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의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정부안) -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서범수·박성민·구자근의원안, 정부안) - 증여재산 공제 확대(김은혜·최은석의원안) -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조정(오기형의원안, 정부안)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또는 정비(권성동·박성훈·차규근·김영환의원안, 정부안)
「부가가치세법」 (11건)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등(김영환의원안, 정부안) -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박홍근의원안, 정부안) -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임광현·황정아의원안) -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박홍근의원안, 정부안)
「개별소비세법」 (4건)	- 다자녀 가구 구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다자녀 기준 완화(안도걸·권칠승의원안)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정부안)
「주세법」 (1건)	-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정부안)

법률안 (건수)	주요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건)	-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정부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정부안)
「국세기본법」 (7건)	- 고액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김영진의원안) - 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등(정부안)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등 청구 허용 및 경정 등의 청구기간 정비(정부안) -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정부안) - 과세정보 제공 의무화 및 국회 제출 강화(김영진의원안) - 모범납세자 존중 문화 조성 체계 마련(임광현의원안) -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송언석의원안)
「관세법」 (7건)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건)	-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적용(정부안) -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율 상향 및 감면기간 연장(박수영·정태호의원안) -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의무 폐지(정부안) -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등 추가(박수민의원안, 정부안)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정부안) -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정부안) -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박성훈의원안, 정부안) -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대상 확대(정부안) -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상향 조정(정부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건)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 근거 마련(정부안)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관련 보완(정부안)
「종합부동산세법」 (9건)	- 종합부동산세 폐지(김은혜의원안) - 공공주택사업자 보유 공공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문진석·정성호의원안) -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조정 및 중과세율 폐지(송언석의원안)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금액 통지제도 신설(임광현의원안) - 납부유예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 추가 등(임광현의원안)
「조세특례제한법」 (146건)	[소득세 분야]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이달희·배준영·최은석·조경태·임미애·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율 및 감면한도 상향 등(박상혁·이병진·강준현·이인선·이상식의원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정부안) - 고향사랑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한병도·황명선·이해식·최은석·정태호·정성호·이만희의원안, 정부안)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박희승·안도걸·엄태영·윤준병·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박성훈의원안)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이종배·박대출·박수영의원안) - 지역화폐 사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박희승·이재명·신영대의원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강화(박대출·이강일·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정부안)

법률안 (건수)	주요 내용
	[법인세 분야]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 등(윤준병·엄태영·김주영·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공제율 상향 등(정성호·강유정·김승수·정연욱의원안)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박성훈·정성호·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등(인요한·박성훈·이인선·천하람의원안, 정부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 및 감면기간 연장(엄태영·한병도·최은석·윤준병·김주영·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박성훈·박수영·김윤덕의원안) -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정일영·윤준병의원안)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상향과 적용기한 연장(황정아·박수영·최은석·정성호·박성훈·박수민·김종양·윤준병·김영진·김정재·김태년·이병진·최민희·박지혜·허성무·안도걸·천하람·신영대·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박대출·김태년·이병진·박수영·최은석·이상식·박성훈·천하람의원안)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분야 추가 등(김태년·최민희·이인선·조승래·안도걸·천하람·신영대·김종양·정성호·정태호·김영진·박지혜·박성훈·박수민·허성무의원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상향, 대상확대, 지원방식 개편 등(윤준병·신영대·박정하·김정호·이연희의원안, 정부안) -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지원요건 완화, 공제율 상향(이인선의원안, 정부안) [소비세·자산세 및 기타 분야] -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신설(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엄태영·조지연·조인철·윤준병·김주영·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가업승계 증여세 대상가업 규정(정부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정부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 명칭 변경, 공제금액 상향입법 및 영세납세자에 대한 공제금액 확대(김영환·진성준의원안)
기타 법률안 (10건)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1건), 「관세사법」(2건), 「세무사법」(3건), 「농어촌특별세법」(1건), 「탄소세법안」(1건), 기타 일괄개정법률안 2건(「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지방세 분야 (127건)	- 「지방세기본법」(6건), 「지방세징수법」(2건), 「지방교부세법」(8건), 「지방세법」(20건), 「지방세특례제한법」(91건)

주: 각 법률별 주요 안건에 대해 정리

2 심의 경과

가. 위원회 심사

(1)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기획재정위원회

□ (법률안 상정) 국세 관련 법률안 총 292건 신규 상정 및 조세소위원회 회부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292건 상정

□ (소위원회 심사) 제22대 국회 신규 소위회부 법률안 292건 심사[3)]

○ 조세소위원회 총 6회 개회

- 11.15.(금), 11.18.(월), 11.19.(화), 11.20.(수), 11.21.(목), 11.22.(금)

○ 제6차 조세소위원회 종료 후 여·야 간사 간 협의 중심으로 논의

□ (법률안 의결 시도) 11월 2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의하여 그간의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와 여·야 간사 간 협의 사항이 반영된 국세 관련 법률안을 의결하려 하였으나, 의결 법률안의 범위에 관한 여·야 이견으로 회의 미개의

□ (본회의 자동 부의) 12월 1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국세 관련 법률안 27건이 위원회 심사기간(11.30.) 도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4)]

○ 11월 29일 국회의장이 국세 관련 법률안 27건(정부안 13건, 의원안 14건) 및 비조세 관련 법률안 8건을 포함한 35건의 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

3) 제6차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수는 292건이나, 실질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는 10월 31일 회부되었으나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법률안 21건을 포함하여 작성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됨

4)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2] 기획재정위원회 국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연번	법률안명	심사대상 안건	자동 부의 세입부수 법안	처리 현황[1)]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의원안 4 정부안 1	계류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	의원안 1 정부안 1	계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의원안 3 정부안 1	계류
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	-	계류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1	-	계류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의원안 1 정부안 1	계류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정부안 1	계류
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정부안 1	계류
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정부안 1	계류
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	계류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의원안 5 정부안 1	계류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정부안 1	계류
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정부안 1	계류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정부안 1	계류
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정부안 1	계류
1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	-	계류
1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	계류
1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정부안 1	계류
18	「탄소세법안」	1	-	계류
1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	-	계류
2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	-	계류

주: 1) 각 법률안의 처리 현황 중 '계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법률안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들 중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

(2)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행정안전위원회

□ (법률안 상정) 지방세 관련 법률안 총 99건 신규 상정

○ 제418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9.2.) 23건 상정
○ 제418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57건 상정
○ 제418회 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19건 상정

□ (소위원회 심사) 제22대 국회 신규 소위회부 법률안 127건 심사[5)]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총 7회 개회하여 이 중 지방세 관련 법률안 3회 심사
- 12.17.(화), 12.18.(수), 12.19.(목)

□ (법률안 의결)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9.) 및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에서 지방세 관련 법률안(5건) 의결

○ 수정가결 2건(「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 대안가결 3건(「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표 3]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연번	법률안명	심사대상 안건	처리 현황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수정가결(정부안)
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	수정가결(정부안)
3	「지방세교부법 일부개정법률안」	8	대안가결 (의원안 8)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대안가결 (의원안 4+정부안)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1	대안가결 (의원안 65+정부안)

5)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세 관련 법률안의 수는 99건이나, 이들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 중 소위에 직접 회부된(「국회법」 제58조제4항) 법률안 28건까지 포함한 127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 진행

(3) 체계자구심사: 법제사법위원회

□ 국세 관련 법률안으로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 27건은 심사기간 도과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음

□ 지방세 관련 법률안으로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5건은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4.12.24.) 심사를 거쳐 가결

[표 4] 법제사법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연번	법률안명	심사대상 안건	심사 결과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행안위: 정부안 수정가결)	수정가결
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 (행안위: 정부안 수정가결)	수정가결
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행안위: 대안)	원안가결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행안위: 대안)	원안가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행안위: 대안)	수정가결

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신청된 법률안은 총 50건이며, 이 중 조세 관련 법률안은 41건임

○ 조세 관련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41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3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28건

○ 그 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출국납부금 등 부담금 정비,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특례 마련,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자동 부의 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 법률안 9건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신청됨

□ 2024년 11월 29일 지정신청 법률안 중 35건이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조세 관련 법률안은 27건임

○ 조세 관련 법률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3건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과 병합심사 되었던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14건

○ 비조세 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연계 법률안 2건,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등 부담금 관련 법률안 4건,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관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의원발의안 8건

□ 지정된 부수 법률안이 국회법에서 정한 심사기한(매년 11월 30일)을 도과함에 따라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 자동 부의됨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5건(이 중 조세 관련 법률안은 27건)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

[표 5]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신청 현황 및 지정 결과

연번	법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소관위	지정 여부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37	박선원의원 등 12인	기재위	×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94	이철규의원 등 16인	산자위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95	이철규의원 등 16인	산자위	○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96	이철규의원 등 16인	기재위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099	임광현의원 등 13인	기재위	○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05	임광현의원 등 10인	기재위	×
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97	정부	기재위	○
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99	정부	기재위	○
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464	정부	기재위	○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65	정부	기재위	○
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72	정부	기재위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18	정부	기재위	○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22	정부	기재위	○
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523	정부	기재위	○
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524	정부	기재위	○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25	정부	기재위	○
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26	정부	기재위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27	정부	기재위	○
1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28	정부	기재위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76	임광현의원 등 10인	기재위	○
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93	송언석의원 등 10인	기재위	×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10	송언석의원 등 13인	기재위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13	송언석의원 등 10인	기재위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56	송언석의원 등 10인	기재위	○

연번	법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소관위	지정 여부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41	송언석의원 등 11인	기재위	○
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37	박수영의원 등 11인	기재위	×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591	이종욱의원 등 11인	문체위	○
28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2204593	이종욱의원 등 12인	외통위	○
2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01	이종욱의원 등 12인	환노위	○
3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02	이종욱의원 등 13인	환노위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50	임광현의원 등 19인	운영위	×
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98	임광현의원 등 11인	기재위	×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38	강유정의원 등 12인	기재위	○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58	김영환의원 등 25인	기재위	○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63	송언석의원 등 10인	기재위	×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88	정태호의원 등 13인	기재위	×
3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89	정태호의원 등 15인	기재위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95	임광현의원 등 10인	기재위	×
3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804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무위	○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864	박수영의원 등 12인	기재위	×
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18	김영환의원 등 11인	기재위	×
4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27	임광현의원 등 10인	기재위	×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60	안도걸의원 등 10인	기재위	○
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61	박홍근의원 등 10인	기재위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67	정태호의원 등 11인	기재위	○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70	오기형의원 등 10인	기재위	○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75	정태호의원 등 13인	기재위	○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85	진성준의원 등 11인	기재위	○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06	송언석의원 등 10인	기재위	×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33	박수영의원 등 13인	기재위	○

주: *는 조세 관련 법률안임

다. 본회의 심의·의결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12월 1일 자동 부의된 국세 관련 법률안 27건 중 정부가 제출한 13건의 법률안이 12월 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 상정됨

○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된 「2025년 예산안」과 12월 1일 자동 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12월 2일 개의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음

- 헌법상 국회의 예산안 의결 시한(12. 2.)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쟁점 사항에 대한 협의 지속 진행
- 조세 관련 법률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 중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 일부 항목에는 이견 존재

○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2025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여·야 협의 중단

- 쟁점 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증폭된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상정됨

-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중 조세 관련 법률안은 정부안만 상정됨
-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조세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다양한 찬반토론이 진행됨

[표 6] 2024년 국세 법률안 관련 본회의(12.10.) 찬반토론의 주요 내용

찬반토론 대상 법률안	찬반토론 주요 내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반대토론] –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는 여·야가 과거에 합의하여 통과시킨 것이며, 이를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지 혹은 유예할 경우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정부안 반대 (차규근 의원)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부자감세 정책이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므로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정부안에 반대 (전종덕 의원)

찬반토론 대상 법률안	찬반토론 주요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반대토론] - 세수결손 및 최근의 국세수입 감소 추세, 감세정책의 미미한 경제활성화 효과, 고소득자산가에 집중된 정부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등 고려 시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 감세정책인 상증세법 개정안(정부안) 반대 (오기형 의원) - 공정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 상속세를 폐지한 일부 국가의 경우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한 반면 우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점, 가업상속공제 등 제도의 악용가능성 고려 시 정부안 반대 (윤종오 의원) [찬성토론] - 정부안은 그간의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세제를 개편하려는 것이며,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상당수 기업이 기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하여 기업의 투자·고용이 증가하면 일자리가 증가해 더 많은 세수 확보가 가능하므로 정부안 찬성 (박수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박찬대의원 외 169인 제안)	[반대토론] - 자본시장 저평가 해소 및 자본시장 활성화,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고, 정규직 지원 확대 및 제도 간소화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편이 요구되므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본회의 수정안 반대 (박성훈 의원) [찬성토론] - 정부안의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일부 대주주에게 세부담 감소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세수확보 방안은 서민증세로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회의 수정안 찬성 (임광현 의원)

□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13건을 의결함[6)]

○ 심의·의결 결과

- (정부안 원안 10건 가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본회의 수정안 2건 가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안 원안 1건 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그 외 14건은 부의되었으나 의결되지 않고 본회의 단계에서 계류됨

○ 정부안·의원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 및 여·야 간사 간 협의 사항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박찬대 의원안)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축소,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등 정부안에 반영된 사항을 일부 삭제하는 내용으로 구성(그 외 정부안에 대한 추가 보완·신설 사항은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처리됨

[표 7] 2024년 국세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 결과

연번	법률안명	본회의 의결일자	본회의 상정법안	심의 결과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10.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정부안)	원안가결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1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 2024년 지방세 관련 세법개정안 5건은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12.26.)에서 심의 · 의결

○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 · 심사한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2024.12.24.)를 거쳐 원안가결

[표 8] 2024년 지방세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 결과

연번	법률안명	본회의 의결일자	본회의 상정법안	심의 결과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6.	정부안 수정안	원안가결
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2.26.	정부안 수정안	원안가결
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6.	행안위 대안	원안가결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6.	행안위 대안	원안가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2.26.	행안위 대안	원안가결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심의 쟁점

가. 개정세법 주요 내용

□ 본 절에서는 세법별로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

○ 이 외 안건에 대한 상세 개정내역은 'Ⅱ장' 참조

□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유예,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등

○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주식·채권·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투자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새로운 과세체계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폐지함

[표 9]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2024년)	개 정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일) 2025년 1월 1일 (과세방법) 분류과세 (과세대상)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 과세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액 - 기본공제액(국내 상장주식 5천만원, 그 외 250만원) - 이월결손금(5년) (세율) 20%(과표 3억원 초과 25%)	폐지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함

[표 10] 가상자산 양도 ·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2024년)	개 정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	2025. 1. 1.	2027. 1. 1.

○ 근로자(종교인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폐지하여 전액 비과세 되도록 함

- 현재는 출산·보육 수당 합해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을 분리하였으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 유지

[표 11]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2024년)	개 정
비과세 대상 및 한도	출산·보육수당 합해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분리, 출산수당은 전액 비과세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혼인신고자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2024~2026년 3년간 한시 적용(2024. 1. 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생애 1회 적용)

[표 12] 결혼세액공제 개정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2024년)	개 정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시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2024. 1. 1.~2026. 12. 31. 혼인신고분, 생애 1회)

○ 기본공제대상인 8세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1인당 10만원씩 확대

[표 13]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2024년)	개 정
자녀출생 순서	첫째	15만원	25만원
	둘째	20만원	3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1인	40만원/1인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주식 · 출자지분을 추가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본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 (이월과세) 거주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제도

[표 1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2024년)	개 정
이월과세 대상 및 적용기간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 등을 증여일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증여자의 취득가액 반영)	(추가) 주식·출자지분 등을 이월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증여일 1년 이내 양도 시 적용

□ (「법인세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의 중간예납 산출방식 단일화 등

○ 부동산임대소득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적용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인상함

[표 1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과표구간	현 행(2024년)	개 정
세율	2억원 이하	9%	1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21%
	3,000억원 초과	24%	24%

○ 세수 변동성 축소를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의 중간예납 산출방식을 종전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의무적으로 가결산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단일화

[표 16]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의 중간예납 산출방식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2024년)	개 정
중간예납 산출방식	(일반법인)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 (직전연도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 (가결산 기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신 설)	(일반법인)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 (직전연도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 (가결산 기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 가결산 기준의 중간예납액 산출방식을 의무화

□ (「부가가치세법」)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 등

○ 명의를 위장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대비 2배 인상함

[표 17]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2024년)	개 정
명의위장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	1%	2%
명의위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	0.5%	1%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근로장려금 세제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등

○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준 중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 금액을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함

[표 18]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2024년)		개 정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기준금액 미만 시 지급)	단독가구	2,200만원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2026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표 19]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2024년)	개 정
대상	(신 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주택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인구감소지역 소재(단 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2) 공시가격 4억원 이하 (3) 2024. 1. 4.~2026. 12. 31. 기간 중 취득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 최대 80%

○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수도권 밖 소재 미분양 주택(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표 20]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2024년)	개 정
대상	(신 설)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2024. 1. 10.~2025. 12. 31. 기간 중 취득 (2)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3)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시행령)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 최대 80%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인상,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정비 등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국가전략기술 4%)에서 10%로 인상함

[표 21]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인상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기술 구분	현 행(2024년)	개 정
증가분 공제율	일반	3%	10%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4%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표 22]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기술구분	현 행(2024년)		개 정	
		R&D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	일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신성장·원천기술	2024. 12. 31.	없음	2027. 12. 31.	없음
	국가전략기술	2024. 12. 31.	2024. 12. 31.	2027. 12. 31.	2027. 12. 31.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수도권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축소 및 고용증대에 대한 추가감면 확대 등

[표 2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유형	현 행(2024년)			개 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外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外		추가 감면
						수도권	수도권 外	
감면율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1]	상시 근로자 증가율 ×0.5	-	5년 25%	5년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1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5년 50%	5년 75%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1]			5년 50%			

주: 1) 신성장서비스업은 2024. 12. 31.까지 초기 3년간 25%p 감면율을 우대

□ **(「조세특례제한법」 - 소비세 분야)**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조정 등

○ 하이브리드,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축소

[표 24]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2024년)	개 정
감면한도	하이브리드	100만원	70만원
	전기	300만원	300만원
	수소전기	400만원	400만원
적용기한		2024. 12. 31.	2026. 12. 31.

□ **(「개별소비세법」)**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신설

○ LPG부탄과 LPG프로판의 세부담 차이 조정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함

[표 25] 수소제조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 행(2024년)	개 정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신 설)	(환급대상) - 수소제조용 LPG부탄 (환급세액) - (판매수량)×(부탄 세액-프로판 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등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표 26]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적용기한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2024년)	개 정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	2024. 12. 31.	2027. 12. 31.

□ **(지방세 관련 법률)** 자녀 양육을 위한 자동차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 신설 등

○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표 27]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대상 확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2024년)	개 정
감면요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감면대상	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감면내용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한도) - 140만원	(감면율) - 3자녀 이상: 취득세 100% - 2자녀: 취득세 50% (감면한도) - 3자녀 이상: 140만원 - 2자녀: 70만원
적용기한	2024. 12. 31.	2027. 12. 31.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의 25%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

[표 28]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 행(2024년)	개 정
감면대상	(신설)	주택
감면요건		- 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할 것 - 유상거래로 취득할 것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일 것 - 3년간 보유할 것
감면내용		- 취득세 25% * (조례) 25%p 범위에서 추가감면
적용기한		2026. 12. 31.

□ (그 외) 「주세법」, 「국세기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

나. 개정세법 주요 심의 쟁점

(1) 개요

□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총 6회에 걸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결혼세액공제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등의 안건을 심사함

□ 조세소위원회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종료 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11.30.)이 도과함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으며, 이 중 정부안(원안 및 수정안)을 중심으로 상정되어 심의·의결됨

□ 본 절에서는 본회의에서 가결된 세법 중에서, 조세소위원회 심사 당시 찬반 의견이 제기되었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던 주요 안건에 대하여 당시의 쟁점 및 논의 내용을 소개함

○ (개정세법 주요 쟁점 항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결혼세액공제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인상,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 연장 및 한도 조정 등

※ (참고) 조세소위원회에서 쟁점 등이 논의되었으나 개정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주요 항목의 경우 'Ⅲ장'에서 별도 정리함

(2) 주요 안건별 심사[7] 쟁점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

○ 관련 안건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정부안, 박대출 의원안)
-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기간 연장(임광현·정태호 의원안[8])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범위 상향 조정(임광현·정태호 의원안)
-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폐지 또는 선택적 적용(임광현·정태호·차규근 의원안)
- 장기보유주식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차규근 의원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임광현 의원안)
- 종합소득 기본공제 계산 시 금융투자소득 제외(임광현·정태호 의원안)

[표 29]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등	(시행일) 2025년 1월 1일 (과세대상)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 과세 (과세표준) 소득액 - 기본공제액(국내 상장주식 5천만원, 그 외 250만원) - 이월결손금(5년) (세율) 20%(과표 3억원 초과 25%) (신고·납부) 예정·확정신고, 반기별 원천징수			
구분	임광현·정태호 의원안[1]	임광현·정태호 의원안[1]	임광현·차규근·정태호 의원안[1]	차규근 의원안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및 폐지 관련	(이월공제 기간) - 5년 → 10년	(기본공제 범위) - 국내 상장주식 등 5천만원 → 1억원	(신고·납부 방식) - 예정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의무 → 폐지 또는 선택적 적용	(공제·감면 신설) - 1년 이상 보유 국내주식에 대해 5% 세액감면 -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공제
구분	임광현 의원안	임광현·정태호 의원안[1]	정부안·박대출 의원안	개 정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및 폐지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신설) - 금융투자상품 이익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기준 조정)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연간 100만원) 계산 시 금융투자소득 제외	(제도 시행 여부) - 폐지	(제도 시행 여부) - 폐지

주: 1) 정태호 의원안(2204967)은 금융투자소득세 이월공제 기간·기본공제 범위·신고 및 납부 방식 및 종합소득 기본공제 기준 조정 관련 개정 내용을 포함

7)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찬반 쟁점이 있었던 항목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

8) 관련 안건 중 정태호 의원안(2204967)은 금융투자소득세 이월공제 기간·기본공제 범위·신고 및 납부 방식 및 종합소득 기본공제 기준 조정 관련 개정 내용을 모두 포함함

○ 주요 심사 의견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고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여·야의 의견이 수렴됨
-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발의된 과세체계 등의 개편 관련 의원안들은 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함
- 다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더라도 2025년 증권거래세율이 추가로 인하됨에 따라 세수 감소 문제가 심화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주식시장 건전화 방안과 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표 3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미국 등 선진국 자본시장에 비해 취약하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자본의 해외유출을 저지하고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성장을 도모할 필요 - 증권거래세의 경우 대내외적 경기 불안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해 2025년 예정된 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
반대 의견	-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되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율이 추가 인하될 경우 세수 확보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등 효과가 미미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지배구조 건전화·소액주주 보호 등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우선될 필요

○ 결론

- 국내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안대로 개정되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의원안들은 반영되지 않음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소득세)

○ 관련 안건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2년(정부안), 3년(송언석 의원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연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정태호 의원안)

[표 31]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송언석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기본공제 금액	연간 250만원	(현행)	연간 5,000만원	(현행)	(현행)
시행일	2025. 1. 1.	2028. 1. 1.	(현행)	2027. 1. 1.	2027.1.1.

○ 주요 심사 의견

- 정부는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시행 시기(2027년)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자산소득이 과세되고 있으며 반복되는 유예는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세유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됨

[표 32] 가상자산 양도 · 대여 소득과세 유예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2024. 7.)에 따른 성과 평가 필요 -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가 도입되는 2027년 이후 과세하는 것이 과세완결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한편 가상자산이 청년층 및 중산층의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
반대 의견	- 이미 두 차례 유예된 상황에서 추가 과세 유예는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 중인 상황을 고려 -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55조원을 상회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

○ 결론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의 내용대로 개정됨

□ 결혼세액공제 신설(소득세)

○ 관련 안건

- 근로소득자가 혼인 시 1인당 1,000만원의 소득공제 적용(박정하 의원안)
-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혼인 시 1인당 300만원의 세액공제 적용(안도걸 의원안)
- 혼인 시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 적용(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표 33] 결혼세액공제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박정하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결혼 공제 신설	(신설)	(공제대상 및 공제기간)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근로소득자 - 혼인신고를 한 해 (공제금액 및 공제방식) - 1,000만원 소득공제 (적용기간)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 분	(공제대상 및 공제기간) -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혼인신고를 한 해 (공제금액 및 공제방식) - 300만원 세액공제 (적용기간)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 분
구분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결혼 공제 신설	(공제대상 및 공제기간)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금액 및 공제방식) - 50만원 세액공제 (적용기간) - 2024. 1. 1.~2026. 12. 31. 혼인신고 분	(공제대상 및 공제기간)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금액 및 공제방식) - 50만원 세액공제 (적용기간) - 2024. 1. 1.~2026. 12. 31. 혼인신고 분	(공제대상 및 공제기간)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금액 및 공제방식) - 50만원 세액공제 (적용기간) - 2024. 1. 1.~2026. 12. 31. 혼인신고 분

○ 주요 심사 의견

- 우리나라의 낮은 합계출산율 및 비혼출산율 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 대응방안으로서 혼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제도의 혼인율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 감소만 초래될 가능성과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표 34] 결혼세액공제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우리나라의 낮은 합계출산율 및 비혼출산율 등을 고려할 때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동 제도의 취지에 공감 - 혼인 비용에 대한 지원은 재정지원보다는 조세지원이 바람직함
반대 의견	- 혼인율 제고 효과는 없으면서 세수감소만 초래하는 것에 대한 우려 제기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지원되는 점에 대한 우려 제기

○ 결론

- 생애 1회에 한해 혼인신고자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정부안의 내용대로 개정됨

□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법인세)

○ 관련 안건

- 최근 3년 평균 투자 대비 증가한 부분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기술별 3~4%에서 10%로 인상(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표 35]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기술 구분	현 행	정태호 의원안·정부안	개 정
증가분 공제율	일반	3%	10%	10%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4%		

○ 주요 심사 의견

- 경기의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에 기업의 투자 증대를 유인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논의되었으나, 제도 개정 이전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성이 우선 검증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됨

[표 36]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에 투자 증가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를 도모 - 기업이 세액공제로 절감된 재원을 재투자하는 등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반대 의견	-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이 기업의 투자증대에 효과적인지 우선 검증해야 하며, 실효성이 없을 경우 재정운용의 비효율만 야기하므로 인상을 지양할 필요 - 기업규모별로 차등한 공제율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증가분 공제율의 인상의 수혜가 대기업에만 집중될 우려

○ 결론

- 기술 구분 없이 투자 증가분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0%까지 인상하는 정부안의 내용대로 의결

□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확대(법인세)

○ 관련 안건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R&D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일반기술뿐만 아니라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까지 확대(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그림 1] R&D 세액공제 공제율의 점감구조 확대 관련 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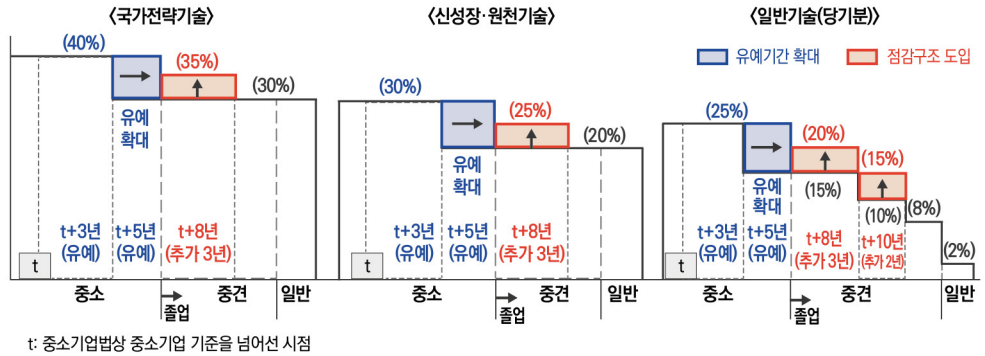

t: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시점

주: 중견기업 전환 후 유예기간 확대는 시행령 규정사항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심사 의견

-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술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첨단기술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점감구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다만 세제지원을 이유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유예기간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지원이 확대된 상황에서 점감구조의 도입이 중복지원이 아닌지 우려도 존재
- 중견기업 전환 이후 연차별로 공제율이 달라져 세액공제 제도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등 제도운용의 비효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됨

[표 37]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기술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첨단기술에 대한 R&D 투자의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존재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장하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세제지원 등의 차이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할 필요
반대 의견	- 중소기업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의 비중이 크지 않고, 매년 감소하는 추세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 상황에서 점감구조의 도입이 중복지원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 - 중견기업의 세제지원에 대한 제도가 복잡해짐에 따라 비효율적인 제도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 결론

- 중견기업 전환 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의 점감구조를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대로 개정됨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개별소비세 등)

○ 관련 안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엄태영 · 김주영 · 조지연 · 조인철 · 윤준병 의원안, 정부안)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30만원 축소(정부안)

[표 38]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한도 축소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적용 기한	2024. 12. 31.	- (엄태영·정태호의원안) 2026. 12. 31. - (김주영의원안) 2027. 12. 31. - (조지연·조인철의원안) 2028. 12. 31. - (윤준병의원안) 2029. 12. 31.	2026. 12. 31.	2026. 12. 31.
감면 한도	(하이브리드) - 100만원 (전기) - 300만원 (수소전기) - 400만원	-	(하이브리드) - 70만원 (전기) - 300만원 (수소전기) - 400만원	(하이브리드) - 70만원 (전기) - 300만원 (수소전기) - 400만원

○ 주요 심사 의견

- 우리 기업이 국내외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축소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표 39]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한도 축소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 시 점진적 감면 규모의 축소가 필요한 상황
반대 의견	- 우리 기업이 국내외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한도 축소가 업계 및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결론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도를 30만원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안대로 개정됨

4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및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가.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15건 개정사항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수정됨

○ 국회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1건 및 「조세특례제한법」 5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됨

※ (참고) 그 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자녀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 인상,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정비 등의 항목이 개정되지 않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8건, 「지방세법」 1건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됨

[표 40] 국회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법률명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부가가치세법」 (1건)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한해 50% 인하하는 정부안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 제46조)
「조세특례제한법」 (5건)	-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계속고용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안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 제29조의8) - 일반투자형 ISA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정부안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 제91조의18 등) -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정부안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 제100조의33, 안 제100조의34 등) -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 세목 중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를 폐지하는 한편, 공제한도를 인하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 제104조의8)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 제104조의15)

법률명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지방세법」 (1건)	- 최근 1년 내 사업소 신설 후 50명을 사후적으로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적용대상이 되도록 수정(제84조의5제2항)
「지방세특례 제한법」 (8건)	- 한센인정착마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유지(제17조의2제1항)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취득 당시 가액 규정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한정하여 적용(제31조제2항 및 제4항) - 비종교단체 재단법인 감면율을 종교단체 재단법인 감면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제38조제4항)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는 면제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제47조의4)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연안여객선 추가(제64조제2항)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유지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 말로 변경(제66조제4항) -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현행 75만원으로 유지(제67조제1항) - 물류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액 추징대상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제71조제1항)

나.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대안 반영된 안건은 총 1건(「지방교부세법」)

[표 41]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여 개정세법에 반영된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법률명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1건)	-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제화, 제9조의4) 김상욱·윤건영·용혜인·이달희·양부남·정춘생·신정훈·박용갑 의원안

5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5~2029년 동안 3,090억원(이하 누적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9)]

[표 42]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누적법	13,941	-1,578	-422	868	-15,899	-3,090
소득세	-2,265	-3,217	-2,319	-1,293	-1,133	-10,227
법인세	15,258	-366	-144	87	-16,875[1)]	-2,040
부가가치세	77	481	482	483	484	2,008
기타	871	1,524	1,558	1,591	1,625	7,169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순액법	13,941	-15,519	1,156	1,290	-1,905[2)]	-1,037
소득세	-2,265	-953	899	1,025	161	-1,133
법인세	15,258	-15,624	223	231	-2,100[2)]	-2,013
부가가치세	77	404	1	1	1	484
기타	871	653	34	33	34	1,625

주: 1) '공시대상기업집단 중간예납 가결산 의무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를 2029년에서 차감
2)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안(3년→5년)'에 따른 2030년 세수 변화분을 포함
1. 누적법은 2024년(기준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하는 방식이며, 순액법은 직전년도 대비 세수효과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세법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는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세 -1조 9,626억원), 결혼세액공제 신설(소득세 -2,481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법인세 -6,961억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법인세 +2,648억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축소(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5,292억원) 등

9)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세법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이며, 확정된 2025년 총수입 예산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이후 서술되는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24년) 대비 변동하는 세수효과로 산정하는 방식인 누적법을 기본으로 사용함

[표 43]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개정세법 주요 항목	2025~2029 연평균	2025~2029 누적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3,925	-19,626
(소득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827	-2,481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1,740	-6,961
(법인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 · 세율 조정	530	2,648
(개별소비세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축소	1,058	5,292

□ 국회 수정사항이 반영된 개정세법의 5년간(2025~2029년, 누적법 기준) 세수효과는 -3,090억원으로, 이는 당초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19조 5,060억원)[10] 대비 19조 1,970억원 축소된 규모

□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 내역

○ 상속세 · 증여세(5년간 +20조 1,862억원)
- 상속세·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미반영: +11조 7,231억원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미반영: +8조 4,631억원 등

○ 법인세(5년간 +4,521억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등 미반영: +4,635억원
-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미반영: -114억원 등

○ 소득세(5년간 +1,069억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등 미반영: +4,108억원
- 일반투자형 ISA 확대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 미반영: +2,313억원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미반영: -5,352억원

○ 부가가치세(5년간 -1조 3,734억원)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미반영: -1조 2,205억원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미반영: -1,529억원

10)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5년간 누적 19조 7,94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표 44]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내역(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상속세·증여세	26,154	43,927	43,927	43,927	43,927	201,862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미반영	16,751	25,120	25,120	25,120	25,120	117,231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미반영	9,403	18,807	18,807	18,807	18,807	84,631
법인세	-1	1,950	3,938	-679	-687	4,521
-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등 미반영	-	1,978	3,966	-650	-659	4,635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미반영	-1	-28	-28	-28	-28	-114
소득세	-834	504	2,028	-314	-315	1,069
-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등 미반영	-	1,508	3,032	-216	-217	4,108
- 일반투자형 ISA 확대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 미반영	100	100	100	1,006	1,006	2,313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미반영	-934	-1,105	-1,105	-1,105	-1,105	-5,352
부가가치세	-2,458	-3,382	-2,839	-2,576	-2,479	-13,734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미반영	-2,226	-3,057	-2,515	-2,252	-2,155	-12,205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미반영	-231	-324	-324	-324	-324	-1,529
기 타	-	-697	-1,400	173	175	-1,749
합 계	22,862	42,302	45,654	40,531	40,621	191,970

주: 1. 일몰이 존재하는 항목의 경우 적용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2.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1 소득세제(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가. 총괄

□ 소득세 분야는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각각 폐지 및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하고, 결혼·출산·양육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 ·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유예하기로 함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폐지함

○ 서민 ·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함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등

○ 2025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

○ 2025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되었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

□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여,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혼인신고자 1인당 50만원, 생애 한 번)를 적용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4~2026년간 한시 적용함

○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공제를 자녀 1인당 10만원씩 확대

- 첫째 / 둘째 / 셋째 이상 공제금액 인당 15 /20 / 30만원 → 25 / 30 / 40만원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전액을 비과세하도록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폐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하도록 하고,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서민 · 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가입대상을 개인사업자 및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에서 개인사업자 및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사업소득금액별로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각각에 대해 500 / 300 / 200만원에서 600 / 400 / 200만원으로 확대

○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

□ 이 외에도 벤처기업 지원 등을 위한 세제지원,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개정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을 위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주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함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및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지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나. 주요 논의사항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2025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

○ 개정 취지: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참고: 증권거래세율 변화)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년, 2023년 및 2024년 세율이 인하된 데 이어 2025년에도 추가 인하가 시행될 예정

[표 45] 증권거래세율 변화

(단위: %)

구 분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	2025년
유가증권(농특세 0.15% 별도)	0.10	0.08	0.05	0.03	0
코스닥	0.25	0.23	0.20	0.18	0.15

□ 최근 개정 연혁

○ 2020년 금융과세 합리화를 목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2022년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 세수효과

○ 추정 곤란

- 금융투자소득세 대상 인원 및 소득금액,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에 따른 과세 규모 등의 정보가 부족해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주요 논의사항

○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이 대립하였으나, 국내 금융시장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는 의견이 확대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여·야의 입장이 수렴하였으며,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됨

-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심리 개선 등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화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고 과세 형평성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

○ 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시행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해 증권거래세율 조정 등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11]이 인하되어 왔으며, 정부는 2025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별개로 예정된 대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할 예정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 대주주의 상장주식·파생상품 등 일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전의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유지될 예정이며,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2024년 1월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축소된 바 있음[12]

11)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 참고로, 당초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별도 논의 없이 계류됨

-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기간 연장(임광현·정태호 의원안),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범위 상향조정(임광현·정태호 의원안),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폐지 또는 선택적 적용(임광현·정태호·차규근 의원안), 장기보유주식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차규근 의원안),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임광현 의원안), 종합소득 기본공제 계산 시 금융투자소득 제외(임광현·정태호 의원안)

[표 46]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시행일) 2025년 1월 1일 (과세방법) 분류과세 (과세대상)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 과세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액 – 기본공제액(국내 상장주식 5천만원, 그 외 250만원) – 이월결손금(5년) (세율) 20%(과표 3억원 초과 25%) (신고·납부) 예정·확정신고, 반기별 원천징수			
구분	임광현·정태호 의원안[1]	임광현·정태호 의원안[1]	임광현·차규근·정태호 의원안[1]	차규근 의원안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및 폐지 관련	(이월공제 기간) – 5년 → 10년	(기본공제 범위) – 국내 상장주식 등 5천만원 → 1억원	(신고·납부 방식) – 예정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의무 → 폐지 또는 선택적 적용	(공제·감면 신설) – 장기(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에 대해 5% 세액감면 –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공제
구분	임광현 의원안	임광현·정태호 의원안[1]	정부안·박대출 의원안	개 정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및 폐지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신설) – 금융투자상품 이익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기준 조정)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연간 100만원) 계산 시 금융투자소득 제외	(제도 시행 여부) – 폐지	(제도 시행 여부) – 폐지

주: 1) 정태호 의원안(2204967)은 금융투자소득세 이월공제 기간·기본공제 범위·신고 및 납부 방식 및 종합소득 기본공제 기준 조정 관련 항목을 포함

(2)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을 2년간 추가 유예하고, 가상자산 과세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과세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2027년 1월 1일
- (기타 조문정비)
  ·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50% 내(대통령령)에서 필요경비 의제 허용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등

○ 개정취지: 이용자 보호제도 성과 점검 및 가상자산 거래 관련 과세기반 정비 등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제도 마련(2022년 1월부터 시행 계획)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20% 분리과세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가상자산소득 내 손익통산 허용(이월결손 불가)

○ 도입 이후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두 차례 유예
- 2021년: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1차 유예)
- 2022년: 시행일 2023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2차 유예)

□ 세수효과

○ 추정 곤란
- 가상자산 취득 및 양도가액, 대상인원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4.7.19.) 성과 점검 및 국제적 정보교환 시행시기(2027년 예정)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3년간 유예하는 의원안(송언석 의원안)이 발의되어 함께 논의됨

○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 간 과세 형평성,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 중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대신 유예 없이 예정된 대로 2025년부터 과세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여러 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시행 또는 유예에 관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유지됨

○ 다만, 이후 해외거래소로의 자본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대되면서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여·야 간 의견이 수렴하였으며,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외 가상자산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의제,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등 관련 조문도 정부안대로 의결됨

[표 47]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송언석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기본공제 금액	연간 250만원	(현행)	연간 5,000만원	(현행)	(현행)
시행일	2025. 1. 1.	2028. 1. 1.	(현행)	2027. 1. 1.	2027. 1. 1.

(3) 결혼세액공제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혼인신고자 1인당 50만원, 생애 한 번)를 3년간(2024~2026년) 한시 적용

○ 개정 취지: 결혼비용 지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2024. 1. 1. ~ 2026. 12. 31. 혼인신고분에 대해 2025.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신설

□ 세수효과

○ (2025년) -827억원 (연평균) -824억원 (2025~2027년) -2,481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및 비혼 출산율이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저출생 문제의 대응방안 중 하나로 혼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 · 야 및 정부 모두 공감하였으나, 동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및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표출됨

○ 논의과정에서 혼인 세액공제를 통한 혼인율 제고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세수감소만 초래할 수 있고,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에게도 지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다만, 혼인비용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재정지원(현금성 지원)보다는 조세지원이 바람직하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동 제도가 이미 발표된 만큼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됨

[표 48] 결혼세액공제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박정하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결혼공제 신설	(신설)	(공제대상 및 공제기간)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근로소득자 - 혼인신고를 한 해 (공제금액 및 공제방식) - 1,000만원 소득공제 (적용기간) - 2025.1.1.이후 혼인신고 분	(공제대상 및 공제기간) -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혼인신고를 한 해 (공제금액 및 공제방식) - 300만원 세액공제 (적용기간) - 2025.1.1.이후 혼인신고 분

구분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결혼공제 신설	(공제대상 및 공제기간)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및 공제방식) - 50만원 세액공제 (적용기간) - 2024. 1. 1.~2026. 12. 31. 혼인신고 분	(공제대상 및 공제기간)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및 공제방식) - 50만원 세액공제 (적용기간) - 2024. 1. 1.~2026. 12. 31. 혼인신고 분	(공제대상 및 공제기간)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및 공제방식) - 50만원 세액공제 (적용기간) - 2024. 1. 1.~2026. 12. 31. 혼인신고 분

(4) 자녀세액공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공제금액을 인당 10만원씩 인상
- (현행)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개정)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 개정 취지: 출산·양육 부담 완화

○ 시행일: 202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2014년 자녀세액공제 도입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20세 이하)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 20만원

○ 2015년 6세 이하 추가공제 및 출산·입양자 공제 신설
-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써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확대된 제도를 2014년 귀속소득분에 소급하여 적용
-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공제액 확대)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 (6세 이하 추가공제)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 15만원 공제, (출산 · 입양자 공제) 1명당 30만원 공제

○ 2016년 출산·입양자 공제를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차등 적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 2017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적용 배제 조치)

○ 2018년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으로 축소하고, 출산·입양자 공제는 유지

○ 2022년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으로 축소하고, 출산·입양자 공제는 유지

○ 2023년 공제대상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에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하고,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씩 적용하던 세액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만 20만원으로 인상

□ 세수효과

○ (2025년) -2,098억원 (연평균) -3,925억원 (2025~2029년) -19,626억원

□ 주요 논의사항

○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고려할 때 출산·양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여·야 및 정부 모두 공감한 가운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세수 감소 규모가 가장 작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됨

[표 49] 자녀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신영대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기본공제	(대상자) -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2명 초과: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30만원 - 2명 70만원 - 2명 초과: 70만원 + 2명 초과 1명당 10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50만원 - 2명 100만원 - 2명 초과: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100만원
출산·입양 공제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부터 70만원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부터 300만원	- 첫째 100만원 - 둘째 150만원 - 셋째부터 200만원
구분	**안도걸 의원안**	**김민전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
기본공제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30만원 - 2명 80만원 - 2명 초과: 80만원 + 2명 초과 1명당 5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30만원 - 2명 65만원 - 2명 초과: 6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대상자) -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 및 손자녀 (연령제한 폐지)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35만원 - 2명 75만원 - 2명 초과: 75만원 + 2명 초과 1명당 50만원
출산·입양 공제	- 첫째 50만원 - 둘째 80만원 - 셋째부터 100만원	- 첫째 60만원 - 둘째 80만원 - 셋째부터 100만원	(현행)

구분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송언석 의원안	개 정
기본공제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2명 초과: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2명 초과: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30만원 - 2명 60만원 - 2명 초과: 60만원 + 2명 초과 1명당 6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2명 초과: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 공제	(현행)	(현행)	- 첫째 50만원 - 둘째 70만원 - 셋째부터 100만원	(현행)

(5)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근로자(종교인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폐지하여 전액 비과세 되도록 함

- 출산·보육수당을 합산하여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출산수당과 보육수당 각각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의 20만원 유지

○ 개정 취지: 출산·양육 부담 완화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2003년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으로 최초 도입

- 동 개정은 2004년부터 시행

○ 2023년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

□ 세수효과

○ 추정 곤란

- 자녀 출산으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소득자수 및 1인당 출산지원금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 저출생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 양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 · 야 및 정부 모두 공감하였으며,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확대에도 대체로 동의

○ 다만, 논의과정에서 비과세 소득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과세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한도로 설정하는 금액에 대한 근거 마련이 쉽지 않고, 한도 금액이 근로자들의 기대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비과세 소득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

[표 50]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정일영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대상) - 출산 관련 급여 - 6세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 출산·보육수당 합해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 - 출산 관련 급여(출산 후 3년 이내 지급) - 6세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 출산 관련 급여 전액 비과세 - 보육수당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종교인 소득 동일하게 적용	(비과세 대상) - 출산 관련 급여 - 6세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 출산 관련 급여 전액 비과세 - 보육수당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 - 출산 관련 급여 - 6세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 출산 관련 급여 전액 비과세 - 보육수당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종교인 소득 동일하게 적용

구분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대상) - 출산 관련 급여(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 - 6세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 출산 관련 급여 전액 비과세 (2021. 1. 1.이후 출생 자녀 대해 2024. 1. 1.~2024. 12. 31. 사이 지급받은 급여 포함, 사용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지급받은 급여 제외) - 보육수당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 - 출산 관련 급여(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 - 6세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 출산 관련 급여 전액 비과세 (2021. 1. 1.이후 출생 자녀 대해 2024. 1. 1.~2024. 12. 31. 사이 지급받은 급여 포함, 사용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지급받은 급여 제외) - 보육수당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 - 출산 관련 급여(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 - 6세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 출산 관련 급여 전액 비과세 (2021. 1. 1.이후 출생 자녀 대해 2024. 1. 1.~2024. 12. 31. 사이 지급받은 급여 포함, 사용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지급받은 급여 제외) - 보육수당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토지·건물 등으로 한정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주식 · 출자지분(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포함)을 추가함

-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본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함

○ 개정취지: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등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22년 특수관계인 간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종전 5년이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한을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10년으로 연장

□ 세수효과

○ 추정 곤란

- 배우자 · 직계존비속 사이의 주식 등 증여 규모, 취득가액 및 양도 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므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주요 논의사항

○ 여 · 야 모두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 이견 없이 공감하며, 주식 등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함

○ 다만, 주식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한에 대해서는 실효성 확보 및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정부안(1년) 보다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년으로 조정하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으로 의결됨

* 토지·건물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한이 10년으로 규정

- 정부안은 주식의 가격 변동성, 운용 후 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한을 1년으로 제시함

[표 5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추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대상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 등	(추가) 주식·출자지분	(추가) 주식·출자지분
이월과세 적용기간	증여일 10년 이내 양도	증여일 10년 이내 양도 (주식 등은 1년)	증여일 10년 이내 양도 (주식 등은 1년)

[표 52] 소득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등)	- 2025. 1. 1.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소득세법 부칙)	(과세 시행일) - 2025. 1. 1.	(과세 시행일) - 2027. 1. 1.
가상자산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의제 허용(소득세법 제37조제6항)	(신설)	-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총양도가액의 일정비율(5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의제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소득세법 제164조의4)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주기) - 거래 발생일이 속한 분기 (제출기관) - 세무서장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주기) - 거래 발생일이 속한 분기 또는 연도 (제출기관) -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소득세법 제177조)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 징수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전액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일반공제) - 자녀 1명: 15만원 - 자녀 2명: 35만원 - 자녀 3명 이상: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일반공제) - 자녀 1명: 25만원 - 자녀 2명: 55만원 - 자녀 3명 이상: 55만원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제87조제2항 · 제3항 · 제4항 · 제5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6백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6백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제92조)	(신설)	(결혼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혼인신고 한 거주자 - 공제기간: 2024. 1. 1.~2026. 12. 31. 동안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및 형태: 혼인신고자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서민·중산층, 소상공인 지원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처목, 제20조제1항)	(신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대상금액)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할인금액 중 비과세 금액) -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비과세대상 요건)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 나이 요건 명확화(소득세법 제50조제1항)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 -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 -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table>
<tr><th>주요 내용</th><th>현 행</th><th>개 정</th></tr>
<tr><td>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납입기한 단축 등(조특법 제29조의6제1항)</td><td>(감면대상)
-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감면요건)
-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
(적용기한)
- 2024. 12. 31.</td><td>(감면대상)
-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감면요건)
- 성과보상기금에 3년 이상 가입
(적용기한)
- 2027. 12. 31.</td></tr>
<tr><td>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조특법 제86조의3제1항)</td><td>(공제부금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공제대상)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공제한도)<table><tr><th>사업(근로) 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tr><td>4천만원 이하</td><td>500만원</td></tr><tr><td>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300만원</td></tr><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table></td><td>(공제부금 납입한도)
- (현행)
(공제대상)
- 개인사업자: (현행)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공제한도)<table><tr><th>사업(근로) 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tr><td>4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r><tr><td>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400만원</td></tr><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table></td></tr>
<tr><td>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조특법 제96조의3제1항)</td><td>(적용기한)
- 2024. 12. 31.</td><td>(적용기한)
- 2025. 12. 31.</td></tr>
<tr><td>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5항, 제100조의5제1항·제2항)</td><td>(소득요건)<table><tr><th>가구유형</th><th>총소득기준금액</th></tr><tr><td>단독가구</td><td>2,200만원</td></tr><tr><td>홑벌이가구</td><td>3,200만원</td></tr><tr><td>맞벌이가구</td><td>3,800만원</td></tr></table>(근로장려금 산정방식)
- 현행</td><td>(소득요건)<table><tr><th>가구유형</th><th>총소득기준금액</th></tr><tr><td>단독가구</td><td>2,200만원</td></tr><tr><td>홑벌이가구</td><td>3,200만원</td></tr><tr><td>맞벌이가구</td><td>4,400만원</td></tr></table>(근로장려금 산정방식)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조정 반영</td></tr>
<tr><td>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 부양 홑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조특법 제100조의3제5항)</td><td>(거주요건)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td><td>(거주요건)
- (현행)
- (신설)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간주</td></tr>
</table>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요건 정비 (조특법 제100조의5·제100조의8)	(반기 근로장려금) - 상반기 소득분:총지급액x0.35 - 하반기 소득분:총지급액x0.35 (지급유보 요건) -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 - 상반기 소득분: 현행 - 하반기 소득분: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지급유보 요건) -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상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제104조의34)	(신설)	(적용대상) - 건설기계 1대를 양도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한 사업자 (과세특례) -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원(시행령 규정사항) 초과분을 3년 분할 산입 - 5년 이내 중복 적용 불가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제도 신설(조특법 제126조의2 제2항제3호다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추가공제) -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추가공제) - (공제율) ① (현행) - ② (현행) + 시행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자산형성 지원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요건 개선에 따른 조세특례 정비(조특법 제87조제10항제3호)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소득요건 검증 절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여부 통보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소득요건 검증 절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폐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조특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 (현행)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 (현행) - (신설) 통계청장이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하여 연금계좌에 관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조특법 제91조의20제1항)	(적용기한) - 가입일 기준 2024. 12. 31.	(적용기한) - 가입일 기준 2025. 12. 31.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제91조의22제3항)	(추징요건) -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추징요건) -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1조의23)	(적용기한) - 매입일 기준 2024. 12. 31.	(적용기한) - 매입일 기준 2027. 12. 31.
과세체계 정비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제56조의3제1항)	(적용기한) - 2024. 12. 31.	(적용기한) - 2027. 12. 31.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소득세법 제61조제2항)	(세액공제 합계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 세액공제 적용방법) -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 합계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 세액공제 적용방법) - (현행) - 세액공제액 합계액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추가
대토보상 과세특례 통보절차 변경(조특법 제77조의2제2항)	(과세특례 적용요건)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	(과세특례 적용요건) - 사업시행자의 통보를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서 삭제
양도소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71조의2)	(신설)	(과세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취득 기한:2024. 1. 4. ~ 2026. 12. 31. **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7조의3제1항)	(적용기한) - 2024. 12. 31.	(적용기한) - 2027. 12. 31.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7조의9제1항)	(적용기한) - 2024. 12. 31.	(적용기한) - 2027. 12. 31.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98조의9)	(신설)	(준공후 미분양주택 요건) - '24. 1. 10. ~ '25. 12. 31. 취득 -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시행령) (과세특례) -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99조의14)	(신설)	(과세특례 적용 요건) - 기초연금 수급자 - 양도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세대 - 양도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시행령) - 양도가액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내 연금계좌에 납입 (과세특례) -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적용기한) - 2027. 12. 31.
기타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신설)	-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의제배당 개선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17조제2항)	(합병시 의제배당=①-②) 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 등이 존속 법인 또는 합병 신설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출자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②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합병시 의제배당=①-②) 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 등이 존속 법인 또는 합병 신설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② (현행)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확대(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가산 제외 대상)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배당소득가산 제외 대상) - (현행) -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 3% 재평가 적립금(합병·분할 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공과금 범위 명확화(소득세법 제33조제1항)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양도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현행) - (추가)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세법 제100조제3항)	(안분 계산 대상) -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안분 계산 대상) - (현행) - (신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할 예정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소득세법 제119조의3 제3항·제4항)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 시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 하위투자자(실질귀속자)별로 비과세 신청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 시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하여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세법 제119조의3제6항 · 제7항)	(신설)	- 원천징수의무자 외 비거주자·외국법인도 직접 경정청구 가능하게 함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대상) - 계약기간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대상) - 외국인 직업운동가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제도 축소(소득세법 제150조제3항)	(적용기한) - 근로자: 2024. 12. 31.까지 - 사업자: 2024. 12. 31.까지 (공제내용) - 근로자: 소득세액의 5% 공제 - 사업자: 소득세액의 5% 공제 (공제한도) - 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지급대상) - 근로자 납세조합, 사업자 납세조합	(적용기한) - 근로자: 2027. 12. 31.까지 - 사업자: 공제제도 폐지 (공제내용) - 근로자: 소득세액의 3% 공제 - 사업자: 공제제도 폐지 (공제한도) - (현행) (지급대상) - 근로자 납세조합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 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	(비과세·면제 신청의무 면제 대상 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비과세·면제 신청의무 면제 대상 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삭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세법 제160조의3제4항)	(신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일정금액(시행령)을 초과하는 법인 (발급기한) -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6조의2제1항)	(적용기한) - 2024. 12. 31.	(적용기한) - 2027. 12. 3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6조의3제1항)	(적용기한) - 2024. 12. 31.	(적용기한) - 2027. 12. 31.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류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6조의4)	(적용기한) - 2024. 12. 31.	(적용기한) - 2027. 12. 3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46조의7)	(적용기한) - 2024. 12. 31.	(적용기한) - 2027. 12. 31.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47조)	(신설)	(적용대상) - 벤처기업 창업주* * 벤처기업의 발기인으로서 30% 이상 의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 (적용요건) -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현물출자로 납입 (과세특례) - 보통주 전환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table>
<tr><th>주요 내용</th><th>현 행</th><th>개 정</th></tr>
<tr><td>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58조제1항)</td><td>(세액공제 규모)<table><tr><th>기부금 규모</th><th>공제율</th></tr><tr><td>~10만원</td><td>100/110</td></tr><tr><td>10만원~
500만원</td><td>15/100</td></tr></table></td><td>(세액공제 규모)<table><tr><th>기부금 규모</th><th>공제율</th></tr><tr><td>~10만원</td><td>100/110</td></tr><tr><td>10만원~
2,000만원</td><td>15/100</td></tr></table></td></tr>
<tr><td>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 추징기준 변경(조특법 제122조의3제5항)</td><td>(추징기준)
-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td><td>(추징기준)
- 사업소득금액 10%(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또는 20%(성실사업자) 이상 과소신고</td></tr>
</table>

2 법인세제(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가. 총괄

□ 법인세 분야는 R&D 및 투자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목적의 세제지원 제도를 정비함

○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시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시 공제율 점감구조를 확대하는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R&D 세제지원을 강화함

○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나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의 공제율을 인하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취지에서 제도를 정비함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당해연도 투자액의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인상함

※ 추가분 공제율: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
→ 기술에 관계없이 10%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3년간 점감구조 도입

※ 중견기업 공제율: 일반 5%, 신성장·원천기술 6%, 국가전략기술 15%
→ 일반 5~7.5%, 신성장·원천기술 6~9%, 국가전략기술 15~20%*

* 중견기업 전환 및 유예기간 종료 이후 3년간, 현행 중견기업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후 현행 공제율 적용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함

※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적용기한 없음

□ 기업의 R&D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함

※ 일반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의 경우 적용기한 없음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R&D 세액공제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3년간 점감구조 도입

※ 중견기업 공제율: 일반 8~15%, 신성장·원천기술 20%, 국가전략기술 30%
→ 일반 8~20%, 신성장·원천기술 20~25%, 국가전략기술 30~35%*

* 중견기업 전환 및 유예기간 종료 이후 3년간(일반기술은 5년간) 현행 중견기업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후 현행 공제율 적용

□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정비

○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편

-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이전지역 요건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외 등에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하고, 대상 및 업종 요건도 변경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편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지만 수도권인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감면율을 축소하고, 고용증대에 따른 추가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의 적용기한 종료함

□ 그 외 과세형평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과세체계 및 세무행정 정비

○ 세수변동성 축소의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식을 가결산 방식으로 단일화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 2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의 적용세율 인상

나. 주요 논의사항

(1)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점감구조 도입, 적용기한 연장 등

- 직전 3년의 설비투자 평균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율을 기술별 3~4%에서 10%로 인상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대(시행령, 3→5년)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일반 중견기업 대비 우대된 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구조 도입

[그림 2]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전환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의 점감구조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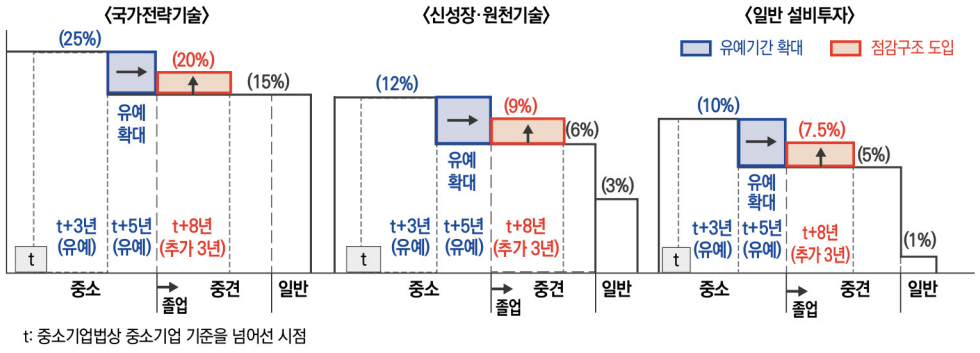

주: 중견기업 전환 후 유예기간 확대는 시행령 규정사항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개정 취지: 기업의 투자 촉진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21년 개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 2022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대공제 도입, 2023년 한시적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투자에 대한 유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표 53]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주요 연혁

시행연도	내용
2021년	기존 개별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 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
2022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반도체, 백신, 이차전지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최초 도입되었으며, 일반 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높은 공제율 적용 ※ 공제율(%): (일반)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16, 중견기업 8, 대기업 6
2023년	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여 2023년 투자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인상 ※ 공제율(%): (일반)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7, 대기업 3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18, 중견기업 10, 대기업 6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15, 대기업 15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 기존 반도체 등 3개 분야에서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하여 7개 분야로 확대

□ 세수효과

○ (2026년) -8,481억원 (연평균) -7,139억원 (2026~2029년) -2조 8,554억원

□ 주요 논의사항

○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점감구조 도입, 적용기한 연장 등과 관련한 정부안이 제출됨

○ 이외에도 세제지원의 강화를 위한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3년 투자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인상하였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과 관련한 다수의 의원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이루어짐

- (공제대상 확대) 현행 신규 장비투자 등으로 한정된 공제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 중고장비 등으로 확대하는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부동산 등 자산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함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의 투자 증가를 유인할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의견과 함께 한시적으로 도입한 정책을 연장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효과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적용기한 연장) 정부는 3년의 적용기한 연장안을 제시하였으나, 기업투자의 결정 및 시행 단계를 고려하면 보다 장기적으로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본회의에서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점감구조 도입, 적용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정부 원안으로 의결됨

[표 54]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인상, 점감구조 도입,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정진욱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적용 기한	2024. 12. 31.	2025. 12. 31.	2026. 12. 31.
증가분 공제율	일반·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점감 구조	없음		

구 분	박성훈·박수민·허성무·신영대 의원안	조지연·박지혜 의원안	김종양 의원안
적용 기한	2027. 12. 31.	2028. 12. 31.	2029. 12. 31.
증가분 공제율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점감 구조			

구 분	이상식·박충권·김영진·정성호 의원안(2201951)	김성원·김태년·박수영·이병진·정성호 의원안(2204780)	천하람 의원안
적용 기한	2030. 12. 31.	2034. 12. 31.	2039. 12. 31.
증가분 공제율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점감 구조			

구 분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적용 기한	2027. 12. 31.	2027. 12. 31.
추가 공제율	기술에 관계없이 10%	기술에 관계없이 10%
점감 구조	중견기업 전환 및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일반 중견기업보다 우대공제율을 적용받는 점감구조 도입	중견기업 전환 및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일반 중견기업보다 우대공제율을 적용받는 점감구조 도입

(2)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시 공제율의 점감구조를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의 R&D 세액공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대(시행령, 3→5년)하고, 기존 일반기술 R&D에만 적용하던 유예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일반 중견기업보다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도 확대 적용

[그림 3]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전환 시 R&D 세액공제 공제율의 점감구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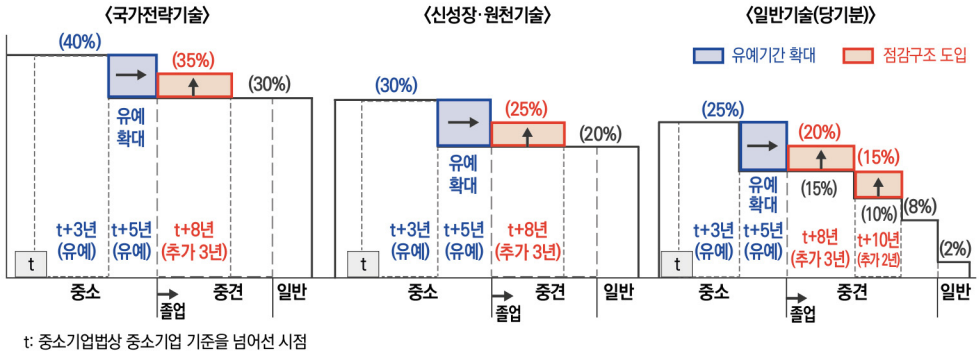

t: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시점

주: 중견기업 전환 후 유예기간 확대는 시행령 규정사항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 취지: 기업의 첨단기술에 대한 R&D 등 투자유인 강화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최근 R&D 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2022년 국가전략기술 도입 및 범위 확대 등 첨단기술에 대한 공제 확대를 중심으로 개정됨

-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는 2017년 신성장 동력기술과 원천기술의 통합 당시 11개 분야에서 2024년 14개 분야로 확대
-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는 2022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2023년에만 3차례 개정을 통해 분야 확대

[표 55]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확대 연혁

개정일시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분야	기술
2017.2.	11	157	(신설)	
2019.2.	11	173		
2020.2.	12(+첨단 소재부품장비)	223		
2021.2.	12	235		
2022.2.	13(+탄소중립)	260	3(+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5
2023.2.	13	272	4(+디스플레이)	42
2023.6.	13	262	6(+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54
2023.8.	13	258	7(+바이오의약품)	62
2024.2.	14(+방위산업)	270	7	6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 (2026년) -1조 4,200억원 (연평균) -1조 1,354억원 (2026~2029년) -4조 5,414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용기한 연장 및 점감구조 확대를 중심으로 R&D 세액공제를 확대한 개정안을 제출함

○ 한편,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등을 포함한 의원안들이 발의되었으며, 심의 과정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국가전략기술 등의 우대공제에 대한 적용기한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기술분야) 인공지능, AI, 클라우드컴퓨팅, 미래형 선박 등 운송수단 등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된 분야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의원안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
- (적용기한)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의 우대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근거로 3년 이상 연장하는 안을 포함한 의원안들도 함께 논의됨

○ 본회의에서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도 점감구조를 확대 적용하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됨

[표 56]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확대 및 적용기한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최은석·천하람 의원안	황정아·정성호·박성훈·박수민·최민희·허성무·안도걸·신영대 의원안
적용기한	2024. 12. 31.	2026. 12. 31.	2027. 12. 31.
점감구조	일반기술에만 적용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구 분	박지혜 의원안	김종양·윤준병 의원안	김영진 의원안
적용기한	2028. 12. 31.	2029. 12. 31.	2030. 12. 31.
점감구조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구 분	김정재·김태년·이병진·박수영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적용기한	2034. 12. 31.	2027. 12. 31.	2027. 12. 31.
점감구조	(현행과 동일)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도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도 적용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창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받는 세액감면에 대해 수도권 내 창업한 기업의 감면율을 축소하고, 감면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고용증대 추가감면을 확대하고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현행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중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
-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 적용 종료
- 연간 5억원으로 감면한도 신설
-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감면의 감면 수준을 확대
-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

[표 5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유형	현 행(2024년)			개 정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外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外		추가 감면
						수도권	수도권 外	
감면율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1]	상시 근로자 증가율 ×0.5	-	5년 25%	5년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1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5년 50%	5년 75%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1]			5년 50%			

주: 1) 신성장서비스업은 2024. 12. 31.까지 초기 3년간 25%p 감면율을 우대

○ 개정 취지: 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유인 확대,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세수효과

○ (2026년) -1,477억원 (연평균) -3,693억원 (2026~2029년) -1조 4,770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수도권내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율 축소,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의 적용기한 종료 등 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고용과 연계된 감면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함

○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원안들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심의 과정에서는 주로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의 필요성, 제도정비의 실효성, 고용연계의 효과성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짐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 정부는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의 목표가 일정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고 우대감면을 종료하는 안을 개정안에 포함하였으나, 여전히 동 업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감면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 (제도정비의 실효성) 수도권내 감면율을 축소하는 정부안에 대하여,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감면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러한 개정안이 수도권 밖의 창업을 독려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함

- (고용연계의 효과성) 창업 중소기업의 고용을 확대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고용과 연계한 추가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고용의 결정이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황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개정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

○ 본회의에서는 감면율 정비,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종료, 고용연계 추가감면 강화 등의 정부 원안대로 의결됨

[표 5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엄태영 의원안	김주영 의원안
적용기한	감면	2024. 12. 31.	2026. 12. 31.	2027. 12. 31.
	서비스업 우대감면	2024. 12. 31.	2026. 12. 31.	2027. 12. 31.
공제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5년 0~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5년 50~1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감면한도		(신 설)	(없음)	(없음)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0.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구 분		윤준병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적용기한	감면	2029. 12. 31.	2027. 12. 31.	2027. 12. 31.
	서비스업 우대감면	2029. 12. 31.	2024. 12. 31.(종료)	2024. 12. 31.(종료)
공제율		(현행과 동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5년 0~50% 그 외 수도권: 5년 25~75% 수도권외 지방: 5년 50~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5년 0~50% 그 외 수도권: 5년 25~75% 수도권외 지방: 5년 50~100%
감면한도		(없음)	기업당 연간 5억원	기업당 연간 5억원
추가감면		(현행과 동일)	상시근로자 증가율×1	상시근로자 증가율×1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기준 산출방식 의무화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경우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택일하여 중간예납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 산출 의무화

○ 개정 취지: 세수 변동성 축소 및 세수전망의 정확성 제고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세수효과

○ (2025년) 1조 4,862억원

- 단, 동 세수증가는 추후 신고분을 사전에 정산하여 발생함에 따라, 추후 동일한 금액의 세수감소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세수 증감효과는 없을 것으로 추정

□ 주요 논의사항

○ 정부안 시행 시 세수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세부담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과 기업의 자금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으며,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됨

[표 59]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의 중간예납 산출방식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안도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중간예납 산출방식	(일반법인)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 (직전연도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 (가결산 기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신설)	(일반법인)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 (직전연도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 (가결산 기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 가결산 기준의 중간예납액 산출 의무화	(일반법인)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 (직전연도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 (가결산 기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 가결산 기준의 중간예납액 산출 의무화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적용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인상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임대 등 수동소득 비중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지배주주 지분이 50%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 개정 취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 적정화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세수효과

○ (2025년) 80억원 (연평균) 530억원 (2025~2029년) 2,648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과 같이 수동소득의 비중이 큰 법인의 세부담을 조정해야 하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요건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개정이 법인이 적용받는 세율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됨

[표 60]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단위: %)

과표구간	현 행	안도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2억원 이하	9	19	1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21	21
3,000억원 초과	24	24	24

[표 61] 법인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R&D 및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제10조)	(중견기업 기본공제율) - 일반 8% 신성장·원천기술 20%, 국가전략기술 30% * 단, 중견기업 전환 및 유예기간 종료 후 일반 기술의 경우 3년간 15%, 4~5년 10%의 공제율 적용 (적용기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 2024. 12. 31. * 일반기술의 R&D 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없음	(중견기업 공제율) - (좌 동) * 단, 중견기업 전환 및 유예기간 종료 후 일반 기술의 경우 3년간 20%, 4~5년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도 각각 25%, 35%의 공제율 적용 (적용기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 2027. 12. 31. * 일반기술의 R&D 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없음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점감구조 도입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제24조)	(공제대상) - 설비 및 장비투자 등 * 단, 중고품,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 공제율: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 (중견기업 기본공제율) - 일반 5%, 신성장·원천기술 6%, 국가전략기술 15% (적용기한: 국가전략기술) - 2024. 12. 31. *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없음	(공제대상) - 설비 및 장비투자 등 * 단, 중고품, 리스에 의한 투자, 임대용 자산 제외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 공제율: 기술 관계없이 10% (중견기업 공제율) - (좌 동) * 단, 중견기업 전환 및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일반 7.5%, 신성장·원천기술 9%, 국가전략기술 20%의 공제율 적용 (적용기한: 국가전략기술) - 2027. 12. 31. *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없음

<table>
<tr><th>주요 내용</th><th>현 행</th><th>개 정</th></tr>
<tr><td>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4조의24)</td><td>(적용기한)
- 2024. 12. 31.</td><td>(적용기한)
- 2027. 12. 31.</td></tr>
<tr><td colspan="3">지역균형발전 및 관련 감면제도 정비</td></tr>
<tr><td>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제6조)</td><td>(감면대상 업종)
- 제조업 등 20개 업종

(감면율)<table><tr><th>기본감면</th><th>추가감면</th></tr><tr><td>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5년 0~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5년 50~100%</td><td>상시근로자 증가율 ×50%</td></tr></table>(감면한도)
- (신설)

(적용기한)
- 2024. 12. 31.</td><td>(감면대상 업종)
- (좌 동)

(감면율)<table><tr><th>기본감면</th><th>추가감면</th></tr><tr><td>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5년 0~50%
그 외 수도권:
5년 25~75%
수도권외 지방:
5년 50~100%</td><td>상시근로자 증가율 ×100%</td></tr></table>(감면한도)
- 연간 5억원

(적용기한)
- 2027. 12. 31.</td></tr>
<tr><td>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정비(조특법 제63조, 제63조의2)</td><td>(감면요건)
- 과밀억제권역내 3년 이상 사업영위(공장이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 이전 전·후 동일업종 영위

- (신설)

(제외업종: 공장이전 세액감면)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등

(감면율: 공장이전 세액감면)
- 수도권내(과밀억제권역외), 지방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대</td><td>(감면요건)
- (좌 동)

* 이전 전 2년(중소기업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업종 영위
- 이전 전 10년 내에 감면적용 기업은 감면에서 제외

(제외업종: 공장이전 세액감면)
- (삭 제)

(감면율: 공장이전 세액감면)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방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대도시</td></tr>
</table>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도시(인구 30만 이상) 등: 5년 100% + 2년 50% -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등): 7년 100% + 3년 50% - 그 외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인구 30만 이상) 등: 5년 100% + 2년 50% -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등): 7년 100% + 3년 50% - 그 외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조세제도 효율화		
법인세 중간예납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가결산 기준 계산 의무화(법인세법 제63조의2, 제76조의18)	(중간예납 계산방법) -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택일	(중간예납 계산방법) -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택일 * 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가결산 기준 계산 의무화
연결납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기준 및 적용기간 변경(법인세법 제76조의22)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규정 적용방법)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시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연결납세 적용 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한) -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규정 적용방법)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시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 (연결납세 적용 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한) -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5년
납세자 편의 제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법인세법 제93조의3제3항~제5항)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신청방법) - 사모국외투자기구: 하위투자자(실질귀속자)별 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 거주자증명서 제출 - 공모국외투자기구 또는 하위투자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모국외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 제출 (원천징수 특례) - 공모국외투자지구: 면제 - 사모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신청방법)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 제출 (원천징수 특례) - 사모·공모국외투자지구: 면제

<table>
<tr><th>주요 내용</th><th>현 행</th><th>개 정</th></tr>
<tr><td>외국법인 경정청구 절차 신설(법인세법 제93조의3제6항 및 제7항)</td><td>(신설)</td><td>(외국법인 직접 경정청구)
- 대상: 외국법인(국외투자기구 포함),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
- 청구기한: 원천징수일 다음달 11일부터 5년 이내
-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td></tr>
<tr><td>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 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td><td>(외국법인 조세조약상 신청의무 면제대상 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td><td>(외국법인 조세조약상 신청의무 면제대상 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삭 제)</td></tr>
<tr><td>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법인세법 제112조의2제4항)</td><td>(신설)</td><td>(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
-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 영수증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
* 3억원 이상으로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위임
- 발급기한: 기부한 다음연도의 1월 10일</td></tr>
<tr><td colspan="3">세부담 적정화</td></tr>
<tr><td>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법인세법 제55조제1항)</td><td>(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9%</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td><td>21%</td></tr><tr><td>3,000억원 초과</td><td>24%</td></tr></table></td><td>(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율)<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td><td>21%</td></tr><tr><td>3,000억원 초과</td><td>24%</td></tr></table></td></tr>
<tr><td>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하향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제12조의4제1항)</td><td>(적용대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50% 이상 인수한 내국법인
* 경영권 지배시 30% 이상

(공제대상)
-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으로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선택</td><td>(적용대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50% 이상 인수한 내국법인
* 경영권 지배시 30% 이상

(공제대상)
-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으로 직접법으로 계산한 금액</td></tr>
</table>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 직접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간접법: 양도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 120%) (공제율) - 기술가치금액의 10% (취득기간) - 최대 2년간 분할취득 가능	* 직접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공제율) - 기술가치금액의 5% (취득기간) - 최대 3년간 분할취득 가능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9조)	(공제액) -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 (적용기한) - 2024. 12. 31.	(공제액) -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적용기한) - 2027. 12. 31.
과세체계 및 조문 정비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생 신탁의 수탁자 과세 대상 제외(법인세법 제5조제2항)	(수탁자 과세 신탁) - 목적신탁, 수익증권발생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 단, 투자신탁은 제외	(수탁자 과세 신탁) - 목적신탁, 수익증권발생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 단, 투자신탁 및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생 신탁 제외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 범위 명확화(법인세법 제21조제5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범위)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범위)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세법 제24조제2항)	(특례기부금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사립학교 운영병원 등	(특례기부금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사립학교 운영병원 등 - 의료기술협력단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명확화(법인세법 제32조제1항)	(해약환급금 준비금의 손금산입)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을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	(해약환급금 준비금의 손금산입)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을 한도로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
지분의 연속성 관련 적격분할 요건 변경(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적격분할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	(적격분할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에 따라 배 * 지분비율 산정시 분할법인 등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하는 근거 마련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금액 이월공제금액 명확화(법인세법 제51조의2제4항 및 제5항)	(배당금액 소득공제시 이월공제대상)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	(배당금액 소득공제시 이월공제대상) -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 합계액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제2조제1항)	(연구개발의 정의) -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연구개발의 정의) -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업종명칭 변경(조특법 제6조제3항 등)	(업종명칭)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업종명칭)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제10조의2제1항)	(과세특례 대상 출연금) -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출연금	(과세특례 대상 출연금) -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조특법 제104조의31)	(배당금액 소득공제시 이월공제대상)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	(배당금액 소득공제시 이월공제대상) -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
기타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 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및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법인세법 제120조의4 및 제124조)	(제출대상)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처)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신설)	(제출대상)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처)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제출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 최대 2,000만원 부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의료기술협력단 추가(조특법 제74조제1항)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 - 사립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 (신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 - 사립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 의료기술협력단 추가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제104조의10)	(과세표준) - Σ[개별선박의 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운항일 이익 결정요인: 선박 톤수, 운항소득, 법인세 실적 등 (적용기한) - 2024. 12. 31.	(과세표준) - (좌 동) * 운항일 이익 결정요인: 선박 톤수, 선박소유현황, 운항소득, 법인세 실적 등 (적용기한) - 2029. 12. 3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4조의11)	(적용기한) - 2024. 12. 31.	(적용기한) - 2029. 12. 31.
정비사업 채권포기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4조의26)	(적용기한) - 2024. 12. 31.	(적용기한) - 2027. 12. 31.

3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등)

가. 총괄

□ 소비세제 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규모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재연장,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한 관세행정 효율화 등에 중점

○ 면세점의 송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신설함

○ 하이브리드,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감면한도를 축소하여 적용함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관세의 경우 개인 자가사용목적 물품에 대한 검사절차 간소화 등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개선하고,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는 등 납세자 편의 제고를 추진함

□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및 가산세율 인상

○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거래정상화 및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도입함

○ 명의위장 사업자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2배 인상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모 조정 및 연장

○ 하이브리드,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축소함

○ LPG부탄과 LPG프로판의 세부담 차이 조정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를 신설함

□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함

□ 관세 세원의 투명성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 세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를 신설하고,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거래 내역을 추가하며, 관세법령상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인상(40%→60%)함

○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 신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간소한 검사절차 적용 등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효율화하고,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 등 사전심사[13] 신청을 허용하며 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으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부족 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함

나. 주요 논의사항

(1)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면세점 송객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자(관광사업자) 대신 매입자(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

○ 개정 취지: 거래질서 정상화 및 세원의 투명성 확보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세수효과

○ (2025년) 109억원 (연평균) 369억원 (2025~2029년) 1,845억원

※ 동 세수효과는 지방소비세(25.3%)를 포함한 금액임

□ 주요 논의사항

○ 정부안은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 유치 대가로 받은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의 폐업 등을 통해 납부하지 않는 탈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세점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됨

- 2022~2023년 국회에서 동 제도의 신설 관련 의원안 등을 논의하였으나 개정되지 않았으며, 당시 정부가 관련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편안을 검토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14]

13) FTA 특혜관세 요건 충족 여부를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심사받도록 신청하여 회신받는 제도

○ (참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현황
- 금지금(2008.7.1.~), 고금(2009.7.1.~), 구리 스크랩(2014.1.1.~), 금 스크랩(2015.7.1.~), 철 스크랩(2016.10.1.~), 비철금속류(2024.7.1.~)

[표 62]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신 설)	- (대상자) 면세점 및 여행사 - (납부절차) 지정 금융회사 전용계좌에 매입자가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후, 금융회사가 매출자에게 공급가액 입금·매입자에게 매입세액 환급·국세청에 세액 납부 - (가산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10%) 및 지연입금가산세(지연입금일 당 0.022%) 신설	- (대상자) 면세점 및 여행사 - (납부절차) 지정 금융회사 전용계좌에 매입자가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후, 금융회사가 매출자에게 공급가액 입금·매입자에게 매입세액 환급·국세청에 세액 납부 - (가산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10%) 및 지연입금가산세(지연입금일 당 0.022%) 신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하이브리드,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축소

○ 개정 취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09년 하이브리드, 2012년 전기, 2017년 수소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도입

14) 2022년 정기회 심사 당시 '기획재정부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실태와 매입자 납부특례 실효성에 대한 연구용역 및 면세점·여행업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나 관련 검토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2023년 정기회 심사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등 면세점 및 여행업계의 송객용역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으며, 감면한도는 2018년 전기자동차가 100만원 인상된 것을 제외하면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동일수준 유지

[표 63]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특례 개정 연혁

구 분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
도입	2009년	2012년	2017년
감면한도	100만원('09~)	200만원('12~'17) → 300만원('18~)	400만원
적용기한	2024. 12. 31. (5차례 연장)	2024. 12. 31. (4차례 연장)	2024. 12. 31. (2차례 연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 (2025년) -4,372억원 (연평균) -3,938억원 (2025~2027년) -1조 1,813억원

※ 동 세수효과는 지방소비세(25.3%)를 포함한 금액임

□ 주요 논의사항

○ 정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감면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일부 축소하려는 것으로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심사됨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한도가 축소될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내연기관 자동차로 이전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 등 장점을 고려 시 수요이전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반론이 제기됨

○ 특히 심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국내외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한도 축소가 업계 및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됨

[표 64]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한도 축소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감면 한도	(하이브리드) - 100만원 (전기) - 300만원 (수소전기) - 400만원	-	(하이브리드) - 70만원 (전기) - 300만원 (수소전기) - 400만원	(하이브리드) - 70만원 (전기) - 300만원 (수소전기) - 400만원
적용 기한	2024. 12. 31.	- (엄태영·정태호의원안) 2026. 12. 31. - (김주영의원안) 2027. 12. 31. - (조지연·조인철의원안) 2028. 12. 31. - (윤준병의원안) 2029. 12. 31.	2026. 12. 31.	2026. 12. 31.

(3) 수소제조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수소제조용 LPG부탄에 대하여 '(판매수량)×(부탄 세액-프로판 세액)' 만큼 개별소비세(kg당 162.4원) 환급

○ 개정 취지: LPG부탄과 LPG프로판의 세부담 차이 조정

○ 시행일: 2025년 4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23년 수소제조용 LPG부탄 및 LPG프로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행령 개정)

- 수소제조용 LPG부탄 kg당 275→176.4원

- 수소제조용 LPG프로판 kg당 20→14원

□ 세수효과

○ (2025년) -17억원 (연평균) -32억원 (2025~2029년) -155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수소제조용 LPG부탄과 LPG프로판이 대체재 관계에 있으므로 연료 간 세부담 형평성 및 원활한 원자재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환급 특례 신설의 개정안 취지를 설명함

○ 논의 과정에서 환급 특례 신설은 시장과 업계의 청정수소 확대 흐름에 맞지 않고, 개질수소(그레이수소) 생산 시 유발되는 탄소의 포집기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세 완화 시 개질수소 생산을 지원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됨

[표 65] 수소제조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환급 특례	(신 설)	(환급대상) - 수소제조용 LPG부탄 (환급세액) - '(판매수량)×(부탄 세액-프로판 세액)'	(환급대상) - 수소제조용 LPG부탄 (환급세액) - (판매수량)×(부탄 세액-프로판 세액)

(4)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개정취지: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1994년 도입 후 현재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이 8차례 연장됨

[표 66]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정 연혁

구 분	적용기한	비 고
교통세법 제정(1994. 1. 1. 시행)	2003. 12. 31.	종가세에서 1996년 종량세로 전환
1차 연장(2004. 1. 1. 시행)	2006. 12. 31.	
2차 연장(2007. 1. 1. 시행)	2009. 12. 31.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 2009년 1월 폐지법률 공포
3차 연장(2010. 1. 1. 시행)	2012. 12. 31.	
4차 연장(2013. 1. 1. 시행)	2015. 12. 31.	
5차 연장(2016. 1. 1. 시행)	2018. 12. 31.	
6차 연장(2019. 1. 1. 시행)	2021. 12. 31.	
7차 연장(2022. 1. 1. 시행)	2024. 12. 31.	
8차 연장(2025. 1. 1. 시행)	2027. 12. 31.	

□ 세수효과

○ 추가적인 세수 변화는 없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종료 시 휘발유·경유에 대한 과세가 개별소비세로 전환됨[15)]

□ 주요 논의사항

○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이 전입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라는 점에서 정부안에 대한 별도의 이견이 없었던 가운데 추후 부칙개정을 통한 일몰연장 방식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됨

[표 67]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적용기한	2024. 12. 31.	2027. 12. 31.	2027. 12. 31.

15)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9조(특별소비세법의 적용 배제)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5)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전자상거래 물품의 거래정보를 확보하도록 하여 개인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간소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제도 신설: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간소한 방법으로 특별 통관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함
-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 관세청장이 거래업자등에게 전자상거래 물품의 주문·결제등과 관련된 거래정보[16]를 주문 또는 배송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17]에 대해서는 간소한 방법으로 수출입 신고 및 물품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개정 취지: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확보함으로써 통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 전자상거래물품 반입 건수가 2021년 8,838만건에서 2023년 1억 3,144만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해외직구 물품이 급증함
- 그러나 현행법은 모든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x-ray 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관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고위험물품에 대해서만 집중검사를 시행하는 등 통관 및 위험물품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세수효과

○ 추가적인 세수 변화는 없음

□ 주요 논의사항

○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밀수품 및 위해물품의 유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나 통관절차의 신속화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정부안에 대해 심사 상 별도의 이견이 없었으며,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됨

16) 주문번호, 구매일자, 물품명, 물품가격, 플랫폼, 수신인 등

17)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 등으로 반입한 물품

- 특별통관의 대상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한정되는 경우 간소한 통관 절차를 악용하여 상용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는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음

[표 68]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특별통관	(대상) - 전자상거래 물품 (방법) -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대상) - 전자상거래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방법) -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대상) - 전자상거래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방법) -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등록제도	(신 설)	(등록대상)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유효기간) - 3년	(등록대상)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유효기간) - 3년
거래정보	(제공시점) -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제공시점) -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제공시점) -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표 69] 소비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업종별 사업자 지원 및 소비자 부담 완화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세법 제26조제1항)	의료보건용역 및 혈액	의료보건용역 및 혈액 - 치료·예방·진단 목적의 동물혈액 포함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환급대상) - 가정용부탄	(환급대상) - 가정용부탄, 수소제조용부탄 (수소제조용 부탄의 환급세액) - '(판매수량)×(부탄 세액-프로판 세액)'으로 산출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특법 제107조의2제1항)	(대상용역) -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대상용역) -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등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숙박용역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조특법 제109조)	(적용기한) - 2024. 12. 31.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대당 100만원	(적용기한) - 2026. 12. 31.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대당 70만원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주세법 제8조제3항)	전통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에 대한 세율 경감률 - 주종별 세율의 100분의 50	전통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에 대한 세율 경감률 - 주종별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과세체계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한 연장(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	(유효기한) - 2024. 12. 31.	(유효기한) - 2027. 12. 31.
조세제도 정비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징수대상자) -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등 (이중과세방지대상자) - 제조자, 판매자 등	(징수대상자) - 가짜석유제품,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등 (이중과세방지대상자) - 제조자, 판매자, 조건부면세 등에 따른 면세유의 반입자·양수자 등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세법 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적용기한) - 2024. 12. 31.	(적용기한) - 2027. 12. 31.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세법 제57조의2)	(신설)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부가세법 제60조)	(과세유형별 가산세율) - (일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 (간이) 공급대가 합계액의 0.5%	(과세유형별 가산세율) - (일반) 공급가액 합계액의 2% - (간이) 공급대가 합계액의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에 대한 가산세 추징 배제 사유 신설(조특법 제106조의7)	(신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산세 추징배제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신설(조특법 제106조의11)	(신설)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신설) - 매출자(관광사업자) 대신 매입자(면세점사업자·관광사업자)가 지정 금융회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 (관련 가산세 신설) - 전용계좌 미사용 시 10% - 지연입금 시 일당 0.022%
관세 관련		
관세 월별성실납세신고제도 신설(관세법 제9조 및 제38조의5)	(신설)	(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연간 수입액이 3천만달러 이상인 자) 중 신청한 자 (대상물품) - 수입신고한 물품 (성실납세신고) -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성실납세신고 (시행일) - 2028. 1. 1.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 의무자 변경(관세법 제12조)	(서류 보관 의무자) -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 신고등 신고자 - 적재화물목록 제출자(선사 또는 항공사)	(서류 보관 의무자) - (좌동) - 적재화물목록 작성자(선사 또는 항공사 및 화물운송선업자)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 제척기간)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관세부과 제척기간) -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연장함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신설(관세법 제38조)	(신설)	(자료요구 근거 신설) - 세관장은 세액심사 시 납세신고 당시 미비점 또는 오류에 대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관세법 제42조, FTA법 제36조)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족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 가산세율을 부족세액의 60%로 인상함
최빈 개발도상국 졸업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관세법 제76조)	(특혜관세 적용) -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함	(특혜관세 적용) -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
계약내용과 다른 수입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관세법 제106조)	(관세환급 반입장소) -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세관장 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 -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관세환급 반입장소) - (좌동) - (좌동) - 통관우체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정비(관세법 제111조)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를 한정함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의무 폐지(관세법 제155조)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물품) - 외국물품 - 국제무역선(기)로 내국 운송을 신고하려는 내국물품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물품) - (좌동) - (삭제)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기간 연장(관세법 제177조)	(내국물품 장치기간) - 1년 범위	(내국물품 장치기간) -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위임 근거 신설(관세법 제232조의2)	(신설)	(위임근거 마련)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관세법 제234조의2)	(신설)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 승인을 받지 않은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에 대한 수출입 금지 근거를 마련함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추가(관세법 제235조)	(보호대상) -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 (좌동)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관세법 제248조)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리 시 신고인이 직접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한 수출입신고 수리 시 화주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필증 발급 대상자를 확대함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효율화(관세법 제254조)	(통관 대상) -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방법) -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 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등록제도) - (신설)	(통관 대상) - 전자상거래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한정) (통관 방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 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등록제도)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은 관세청 또는 세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함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재산 거래내역 추가(관세법 제264조의2)	(과세자료 제출기관) - 중앙관서·지자체·공공기관, 신용카드업자, 금융회사 등	(과세자료 제출기관) - (좌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 범위 정비(관세법 제267조)	(무기 범위) - 권총·소총,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무기 범위)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 무기등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변경(관세법 제270조의2)	(벌금 산정기준) -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벌금 산정기준) - 가격조작 차액, 물품원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관세법 제275조의3)	(처벌 대상) - 납세 신고시 (형량) - 명의대여·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 - (좌동) -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형량) - 자신 명의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타인 명의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업무 민간위탁 근거 정비(관세법 제329조)	(위탁업무) - 보세구역 내 사업자 등록 (업무위탁 대상) - 보세운송업자	(위탁업무) - (좌동) - 사업자 등록·내용 변경 및 갱신 (업무위탁 대상) - (좌동) - 화물운송주선업자
협정과세 사후적용신청 대상 확대(FTA법 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대상) -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 -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대상) - (좌동) - (좌동) -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 신고한 날부터 45일 이내
원산지 등 사전심사 대상 예외규정 삭제(FTA법 제31조)	-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없음	(삭제)
사전심사서 내용변경 대상 확대(FTA법 제32조)	- 협정에서 정한 경우에만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협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기타 조문정비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65조 및 제176조의2 등)	- '입항하였을 때' 등 -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입항보고', '세관장에게 출항 전 출항허가' 등 절차 위임 근거가 미비함 - (신설)	- '입항하려는 때'와 같이 조문을 명확히 함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보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허가' 등 위임 근거를 마련함 - 관세정보원에 대한 지도·감독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18조의2)	(적용기한) - 2024. 12. 31.	(적용기한) - 2027. 12. 31.

4 기타 세제(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가. 총괄

□ (국제조세조정법)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OECD 모델규정 및 행정지침을 반영하는 등 정부 원안대로 개정됨

○ 또한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보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명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등 과세체계 합리화 방향으로 개정함

□ (국세기본법)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정부 원안대로 개정됨

○ 경정청구의 사유에 세액공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를 추가하여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미수령 환급금의 충당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월세액공제가 사용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이월세액공제가 사용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특례를 신설

□ (기타 분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원안대로 개정됨

나. 주요 논의사항

(1)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보완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OECD 모델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보완

-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그룹 및 구성기업·고정사업장 등의 정의 명확화,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 근거 마련 등

○ 개정 취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시기에 맞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OECD 모델규정과 그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여 도입국가들과 과세체계의 동일성을 갖추기 위함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세수효과

○ 추정 곤란

- 추계 기간 중 다국적기업 등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주요 논의사항

○ 국제적으로 합의된 글로벌 최저한세의 OECD 모델규정 등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별도의 이견이 없었으며,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됨

- OECD 모델규정 및 행정지침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대상이 되는 그룹 및 구성기업·고정사업장 등의 정의 명확화,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매출액(연결 재무제표 기준) 산출방법 위임 근거 마련 등

[표 70]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보완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보완	다국적기업의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등 명확화	(OECD 모델조약) - 그룹 및 구성기업의 정의 명확화 -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 (OECD 행정지침 반영) -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등	(OECD 모델조약) - 그룹 및 구성기업의 정의 명확화 -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 (OECD 행정지침 반영) -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등

(2)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사유에 세액공제액의 과소신고를 추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사유에 '세액공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를 추가

○ 개정 취지: 과소신고된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기한 내 납세자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세수효과

○ 추정 곤란

- 세액공제액 과소신고 후 경정청구 발생건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 2023년 대법원의 결정[18]으로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불허되면서 세액공제액의 과소신고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안에 대해 심사 상 이견이 없었으며,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됨

[표 71]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사유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일반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과다신고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과소신고	- 좌 동 -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과소신고	- 좌 동 -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과소신고

(3) 미수령 환급금의 충당기준 인상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환급금 지급결정 후 1년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세 미수령 환급금을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체납되지 않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개정 취지: 환급금 지급결정 이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납세자의 환급권이 소멸되는 문제를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18)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9두62352 판결

□ 세수효과

○ 추정 곤란

- 추계 기간 중 연도별 20만원 이하 미수령 환급금 발생 추이 및 납세자의 미체납 국세 충당 비율의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금액 기준 상향의 타당성이 있고,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취지를 감안하여 정부안에 대해 심사 상 별도의 이견이 없었으며,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됨

[표 72] 미수령 환급금 기준 상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10만원	20만원	20만원

(4) 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를 신설

○ 개정 취지: 통상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역외거래는 7년)에 비해 2022년 세법개정으로 이월공제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되면서 과세관청이 당초 공제가 발생한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의 도래로 인하여 경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세수효과

○ 추정 곤란

- 추계 기간 중 부과제척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 정부안은 이월공제 적용기한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 측면의 누락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됨

[표 73] 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부과제척기간 특례) - 이월결손금	(부과제척기간 특례) - 이월결손금 - 조특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	(부과제척기간 특례) - 이월결손금 - 조특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

[표 74] 기타 세제 개정 내용 총괄표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조세특례제한법」(자산세 분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직접 규정(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	(가업승계 대상) -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규정 인용조문 정비(조특법 제30조의7)	-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준용	-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및 제13항을 준용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적용대상 어업권 정비(조특법 제71조)	(감면대상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감면대상인 어업권) - 다음의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어업권 ·「내수면어업법」 제7조의 어업권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의 양식업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71조의2)	(신설)	(과세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취득 기한: 2024. 1. 4. ~ 2026. 12. 31. ** 양도소득세도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98조의9)	(신설)	(준공후 미분양주택 요건) - '24. 1. 10. ~ '25. 12. 31. 취득 -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시행령 규정사항) (과세특례) -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도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보완(제6조)	(청구서 제출 자료) - (추가) (경정관련 자료 보완) - (신설)	(청구서 제출 자료) - 정상가격 입증서류 (경정관련 자료 보완) - 제출 자료 미비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 요구 가능
상계거래 적용대상 조문 정비(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7,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	(상계거래의 인정) * 타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9,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명확화(제26조)	- 손금불산입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출자금액 및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를 가장 우선하여 적용하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상 혼성금융상품[1] 거래의 지급이자를 차선하여 적용한 후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적용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선행하여 적용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 근거 마련(제36조~제38조)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 - (추가)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 - 암호화자산정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제54조)	(거주자 거주기간)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면제대상) - (추가)	(거주자 거주기간)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 (면제대상) -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제58조)	(제출·보완 요구) - 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자료의 제출·보완 요구 가능	(제출·보완 요구) - 요구기간 제한 삭제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보완 (제61조, 제62조, 제67조, 제74조, 제77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4조)	다국적기업의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등 명확화	(OECD 모델조약) - 그룹 및 구성기업의 정의 명확화 -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 (OECD 행정지침 반영) -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등
「국세기본법」		
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의2)	(부과제척기간 특례) - 이월결손금	(부과제척기간 특례) - 이월결손금 - 조특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
일반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제45의2제1항)	(일반적 경정청구 사유)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과다신고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과소신고	(일반적 경정청구 사유) - (좌동) -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과소신고
미수령 환급금의 국세 충당기준 상향(제51조)	- 국세 및 강제징수비 충당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	- 국세 및 강제징수비 충당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

주: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혼성금융상품"이란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5 지방세제(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가. 총괄

□ 지방세 분야는 자녀 양육·서민 주거안정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 ·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

○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전액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2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규정을 신설함

○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애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를 확대하고, 소형·저가주택 매입시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하기로 함

○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 및 비수도권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기업 활동 지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기간을 2년 연장함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차량 상속 후 말소등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인정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담배 폐기시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를 간소화 함

□ 과세체계 합리화

○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함

○ 구속자 등에 대한 서류 송달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요소에 舊 「지방세징수법」상 가산금을 추가하여 제도 미비점을 보완함

○ 공매 압류재산 매수 제한 사유를 추가하고,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방세 징수 관련 항목을 국세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 이 외에 시행령에 규정된 소방안전교부세 법정배분 비율 법제화 등 개정

○ 소방 분야 재원의 안정적인 교부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나. 주요 논의사항

(1)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대상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감면기한 3년 연장

-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을 3자녀 이상 양육자에서 2자녀 이상 양육자로 확대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조항의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

○ 개정취지: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세수효과

○ (2025년) -1,794억원 (연평균) -1,794억원 (2025~2027년) -5,381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는 자녀 양육 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최대 140만원)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며,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진행됨

○ 심사과정에서 자녀 지원방안으로써 취득세 감면정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다자녀 기준의 적정성,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2022년 기준 2자녀 가구는 약 224만 가구, 3자녀 이상 가구는 약 45만 가구이며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경우 취득세수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대상 확대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논의 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해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정부안에 대해 여·야 모두 합의함

- 2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율을 50%(감면한도 70만원)로 차등 적용

[표 75]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과 감면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박정하·윤준병·한정애 의원안	서영교·한병도·박용갑 의원안	김선교 의원안
감면요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18세 미만 3자녀 이상	18세 미만 3자녀 이상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감면대상	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감면내용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한도) - 140만원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한도) - 140만원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한도) - 140만원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4. 12. 31.	2029. 12. 31.	2027. 12. 31.	2027. 12. 31.

구분	김민전 의원안	고동진·김승수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감면요건	18세 미만 2자녀 이상	18세 미만 2자녀 이상	18세 미만 2자녀 이상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감면대상	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감면내용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한도) - 140만원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한도) - 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자동차: 200만원 - 그 외: 140만원	(감면율) - 3자녀 이상: 취득세 100% - 2자녀: 취득세 50% (감면한도) - 3자녀 이상: 140만원 - 2자녀: 70만원	(감면율) - 3자녀 이상: 취득세 100% - 2자녀: 취득세 50% (감면한도) - 3자녀 이상: 140만원 - 2자녀: 70만원
적용기한	2029. 12. 31.	2027. 12. 31.	2027. 12. 31.	2027. 12. 31.

(2) 전기·수소전기차·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전기·수소전기차·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 종료

-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2년 연장
- 수소전기차 및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

○ 개정취지: 친환경차량 및 에너지효율차량의 보급 확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세수효과

○ (2025년) -4,542억원 (연평균) -4,148억원 (2025~2027년) -1조 2,443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전기·수소전기차·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등을 연장하는 정부안이 제출되어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진행됨

- 정부안에는 전기차·경형승용자동차의 감면한도를 축소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일몰을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

○ 심사과정에서 전기차 및 경형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계속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전기차 및 경형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축소에 대한 이견이 제기됨

○ 논의 결과 전기·수소전기차·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전기차·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는 축소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함

- 수소전기차·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3년,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함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일몰을 종료하는 것으로 개정됨

[표 76] 전기·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강대식 의원안	서영교·한병도 의원안	조인철 의원안
전기차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4.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6.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7.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8. 12. 31.
수소 전기차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4.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6.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7.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8. 12. 31.
하이 브리드차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40만원 (적용기한) -2024.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40만원 (적용기한) -2026.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40만원 (적용기한) -2027.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40만원 (적용기한) -2028. 12. 31.

구분	윤준병 의원안	박용갑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전기차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9.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6.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2026년까지: 140만원 - 2027년: 100만원 (적용기한) -2027.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6. 12. 31.
수소 전기차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9.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6.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7.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140만원 (적용기한) -2027. 12. 31.
하이 브리드차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40만원 (적용기한) -2029. 12. 31.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40만원 (적용기한) -2027. 12. 31.	(일몰 종료)	(일몰 종료)

[표 77] 경형 승용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한병도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감면 대상	배기량 1천cc미만이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	배기량 1천cc미만이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	배기량 1천cc미만이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	배기량 1천cc미만이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
감면 내용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한도) - 75만원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한도) - 75만원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한도) - 40만원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한도) - 75만원
적용 기한	2024. 12. 31.	2027. 12. 31.	2027. 12. 31.	2027. 12. 31.

(3)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및 추징요건 완화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취득세 감면의 추징 사유 완화 등

-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농지조성을 위한 임야 및 농업용시설을 취득하거나, 농지 등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된 경우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귀농인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취득세 추징 사유에서 제외
- 특별자치도의 범위를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로 명시

○ 개정 취지: 농촌 경쟁력 강화 및 지방소멸 문제 완화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세수효과

○ (2025년) -22억원 (연평균) -22억원 (2025~2027년) -66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면서 추징요건을 완화하고 특별자치도 범위를 정비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며,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됨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하지 않도록(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 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귀농인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농업외 소득을 일정 부분 인정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정부안에 이견 없이 합의함

[표 78] 귀농인 취득세 감면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신성범·김선교·한병도 의원안	김종양·정희용·윤준병·안호영 의원안
추징 요건	(추징대상) -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추징대상) -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추징대상) -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자치도 범위	(신 설)	-	-
적용기한	2024. 12. 31.	2027. 12. 31.	2029. 12. 31.
구분	**서천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추징 요건	(추징대상) -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추징대상) -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한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추징	(추징대상) -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한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추징
특별자치도 범위	-	(특별자치도 범위) -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범위) -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
적용기한	2030. 12. 31.	2027. 12. 31.	2027. 12. 31.

(4)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 감면
- 조례로 지자체별 취득세 감면율을 25%p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 가능

○ 개정취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세수효과

○ (2025년) -714억원 (연평균) -714억원 (2025~2026년) -1,428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하는 안을 제출하였음
- 조례로 25%p 범위에서 추가 감면 가능

○ 심사과정에서 갭투자를 통한 주택 투기 등이 우려되며 생활인구를 실질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정부안에 대해 합의함

[표 79]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감면대상	(신설)	주택	주택
감면요건	(신설)	- 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할 것 - 유상거래로 취득할 것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일 것 - 3년간 보유할 것	- 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할 것 - 유상거래로 취득할 것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일 것 - 3년간 보유할 것
감면내용	(신설)	- 취득세 25% * (조례) 25%p 범위에서 추가감면	- 취득세 25% * (조례) 25%p 범위에서 추가감면
적용기한	(신설)	2026. 12. 31.	2026. 12. 31.

[표 80] 지방세제 분야 개정 주요 내용 총괄표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완(제40조)	(지방세징수권 시효 중단 사유)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지방세징수권 시효 중단 사유) - (현행) - 압류. 다만, 시효중단 사유로 압류 제외
후발적 경정청구 표현 명확화(제50조)	(후발적 경정청구 표현 명확화) - 후발적 결정·경정청구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 표현 명확화) -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는 표현 삭제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시 특례가 부여되는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 상향 조정(제93조)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 - 소액사건인 경우 이의신청 대리인의 전문자격사가 아닌 친족 등으로 선임가능 -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 1천만원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 - (현행) -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 2천만원
「지방세법」		
차량 상속 후 말소등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인정 기한 연장(제9조)	(상속차량 취득세 비과세 말소등록 기한)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차량 취득세 비과세 말소등록 기한)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9개월 이내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제8장 제2절의2)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 2025. 1. 1. 시행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 (폐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 등(제103조의20)	(법인지방소득세율) - 2억원 이하: 0.9% - 200억원 이하: 1.9% - 3천억원 이하: 2.1% - 3억억원 초과: 2.4%	(법인지방소득세율) - 2억원 이하: 1.9% - (이하 현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조)	(가상자산 과세) - 2025. 1. 1. 시행	(가상자산 과세) - 2027. 1. 1. 시행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귀농인 취득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추징사유 개정(제6조)	(적용기한) - 2024. 12. 31.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적용기한) - 2027. 12. 31.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시·군·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국가 등에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산세 감면 연장 및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감면율 하향 조정(제13조)	(적용기한) - 2024. 12. 31.	(적용기한) - 2027. 12. 31. (단서 추가) -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재산세 50% 감면
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66조제4항 및 제5항)	(적용기한) - 전기차: 2024. 12. 31. - 수소전기차: 2024. 12. 31.	(적용기한) - 전기차: 2026. 12. 31. - 수소전기차: 2027. 12. 31.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67조)	(적용기한) - 2024. 12. 31.	(적용기한) - 2027. 12. 31.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제75조의5조제3항)	(신설)	(감면대상)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 (감면율) - 취득세 25% *조례로 25%p 범위에서 추가 감면 가능 (적용기한) 2026. 12. 31.
지방 이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79조제1항 및 제2항)	(적용기한) - 2024. 12. 31.	(적용기한) - 2027. 12. 31.
지방 이전 공장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80조제1항)	(적용기한) - 2024. 12. 31.	(적용기한) - 2027. 12. 31.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대상 추가(제177조의2제1항제1호)	(신설)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대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 중지 절차 간소화(제104조)	(체납처분 집행중지 절차) - 체납처분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 1개월간 공고	(체납처분 집행중지 절차) - (현행) - (삭제)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NABO

III

심사대상 중 개정세법 미반영 항목 및 논의내용

1 정부제출안 중 개정세법 미반영 항목

□ 2024년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정부제출 세법개정안(관련 의원발의안 포함) 중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은 주주환원 촉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인하(「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임

○ 본 절에서는 정부제출안 중 개정세법에 미반영된 항목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 당시 논의되었던 쟁점 사항들을 소개함

가. 「조세특례제한법」 미반영 항목

□ 주주환원 촉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정부안)

○ 관련 안건

- 주주환원 금액을 전년 대비 및 최근 3년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시킨 상장기업(이하 '밸류업 기업')에 대하여 3년간 주주환원 금액의 5% 이상 증가분에 대해 5% 세액공제(정부안)[19]

  ※ 주주환원 금액: 기업의 배당액 및 자사주 소각 금액

-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경우, 3년간 개인주주가 주주환원 확대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 일부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14% → 9%)하고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하여 분리과세(25%)를 허용(정부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다만 주식가치의 증가에 대한 개정안의 효과가 불확실하며, 대주주의 배당에 대해 과도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등 조세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기업의 주주환원 금액이 직전연도 및 이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해야 하므로, 이미 주주환원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19) 한편, 주주환원 촉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요건을 주주환원 성향이 전년도 시장평균의 120~140% 초과한 기업(이인선 의원안, 천하람 의원안), 배당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기업(인요한 의원안) 등으로 규정하는 의원안 존재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정부안)

○ 관련 안건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요건을 기존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서 계속고용 및 탄력고용 인원 증가로 개편하고, 증가인원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액 변경 및 다년도 공제 폐지(정부안)

  ※ 상시근로자: 계속고용 인원과 탄력고용 인원 중 1년 이상 기간제 및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포함

- 제도의 간소화를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부여되었던 추가공제를 기본공제에 통합하고, 2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폐지(정부안)

-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정부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다양한 형태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탄력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다만, 탄력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등 본래의 정책취지와 다르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지원대상 확대(정부안, 이인선 의원안)

○ 관련 안건

-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외국 자회사 범위에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회사와 소재지국 정부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내국인이 100% 출자한 회사를 포함하는 등 적용대상을 확대(정부안)

-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뿐만 아니라 조사(탐사)사업비,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는 투자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이인선 의원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합작법인 투자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하고 조사(탐사)·개발·생산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다만, 정부안에 따라 외국자회사 요건 중 소재지국 정부의 지분을 제외하고 대상을 산정하는 경우, 외국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자원 공급망 확충에 기여할 수 없는 경우도 특례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또한, 조사·개발·생산에 대해 지출하는 투자의 경우,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제지원이 중복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정부안, 박대출·정태호·이강일 의원안)

○ 관련 안건

- 기존 ISA(일반투자형) 납입한도·비과세한도 확대* 및 신규 ISA(국내투자형) 신설**(박대출 의원안, 정부안)

  *납입한도: 1억원(연 2천만원) → 2억원(연 4천만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천만원)

  **운용자산: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 등 한정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천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 기존 ISA 납입한도를 1억원(연 2천만원)에서 2억원(연 4천만원)으로, 비과세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정태호 의원안)

- 기존 ISA 납입한도를 1억원(연 2천만원)에서 3억원(연 2천만원, 단 첫해 2억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한도를 삭제함으로써 세제지원 확대(이강일 의원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을 고려할 때 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할 수 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이 허용되는 국내투자형 ISA의 신설은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

□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제규모 조정(정부안, 김영환·진성준 의원안)

○ 관련 안건

-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및 세무대리인 등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정부안)

- 제도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법률로 규정함과 동시에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공제금액을 인상(김영환·진성준 의원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정부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전자신고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해 공제를 종료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유지하는 내용임

- 다만, 공제 종료가 스스로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 등이 제기됨

나.「부가가치세법」 미반영 항목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정부안, 김영환 의원안)

○ 관련 안건

- 직전년도 매출액 5~10억원 구간 사업자의 공제율을 50% 인하(정부안)
- 2026년까지 적용 예정인 우대 공제율 및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영구적으로 적용(김영환 의원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정부안은 일부 사업자의 공제율을 인하함으로써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취지의 내용이며, 김영환 의원안은 카드수수료 상승과 더불어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대 공제율 및 우대 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임
- 심사 과정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정부안과 같은 일률적 매출액 기준으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미반영 항목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정부안, 엄태영·권성동 의원안)

○ 관련 안건

-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현행 1억원 이하(10%) ~ 30억 초과(50%)에서 2억원 이하(10%) ~ 10억원 초과(40%)로 조정(정부안)
-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현행 1억원 이하(10%) ~ 30억 초과(50%)에서 1억원 이하(10%) ~ 30억원 초과(30%)로 조정(엄태영 의원안)
-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현행 1억원 이하(10%) ~ 30억 초과(50%)에서 1억원 이하(5%) ~ 30억원 초과(40%)로 조정(권성동 의원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정부안 등 개정안에 대해,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1997년 이후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변화가 진행된 상황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반면 부의 세습 및 세수감소에 따른 국가재정 문제가 우려되며, 정부가 내년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추후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 인상(정부안, 김은혜·최은석·안도걸·임광현·송언석·권성동 의원안)

○ 관련 안건

- 기초공제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김은혜 의원안)
- 배우자공제 최대공제액을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인상(최은석 의원안)
-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을 5억원에서 7.5억원 인상(안도걸 의원안), 10억원 인상(임광현 · 송언석 의원안), 12억원 인상(권성동 의원안), 20억원 인상(최은석 의원안)
-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정부안)
-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5억원으로 인상(안도걸 의원안), 8억원으로 인상(임광현 의원안), 10억원으로 인상(김은혜 · 권성동 · 송언석 의원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자녀공제 인상안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확대되는 것이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개편이며 향후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시 자녀공제 인상은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반면, 상속인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자녀공제 인상이 저출산 정책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전환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율뿐만 아니라 상속공제 전체가 개편되어야 하므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조정(정부안, 권성동 의원안, 박성훈 의원안, 차규근·김영환 의원안[20])

○ 관련 안건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권성동 의원안, 박성훈 의원안, 정부안)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20% 범위에서 할증률 조정(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상속 시 과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과세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며, 기업상속 과정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과중한 세부

20) 대표발의자 2인

담을 야기하여 기업승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
- 자본시장에서 기업 매각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거래되는 현실에서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를 위해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 가업상속공제 확대(정부안, 서범수·박성민·구자근 의원안)

○ 관련 안건
- 도심융합특구 내 소재한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없이 적용 (서범수 의원안)
- 기회발전특구 적용대상 기업규모를 평균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액을 가업영위기간별 300~600억원 → 400~1,000억원으로 확대(박성민 의원안)
-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2배 인상(구자근 의원)
- 밸류업·스케일업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2배 인상 및 적용대상 매출액 제한 폐지,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없이 적용(정부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경영 영속성을 확보하고 기업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다만 정부안 등 개정안의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지역별 편차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스케일업·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무조건 확대하기보다 실질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제도의 적절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2 의원발의안 중 개정세법 미반영 항목

□ 2024년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중에서, 개정세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세소위원회 심사 당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주요 의원발의안(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미포함)에 대하여 그 내용 및 논의사항을 소개함

□ 취학 전 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비용 관련 세액공제 신설 등(강승규·정일영 의원안)

○ 관련 안건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등을 추가하고,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강승규 의원안)
-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20%를 5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하는 제도를 신설(정일영 의원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돌봄서비스 미비 등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하면서 취학 전 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세제지원보다는 재정지원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정(이종배·박대출·박수영 의원안)

○ 관련 안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40%(2023.4.~12. 사용분은 50%)에서 기간 무관하게 전체 공제율을 50%로 상향 조정(이종배 의원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2024.1.~6. 사용분에 한해 80%로 상향 조정(박대출 의원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2024.1.~12. 사용분에 한해 80%로 상향 조정(박수영 의원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전통시장 및 내수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근본적으로는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박대출·김태년·이병진·박성훈·박수영·최은석·이상식·천하람 의원안)

○ 관련 안건

- 2023년 투자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하였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박대출·김태년·이병진·박성훈[21]·박수영·최은석·이상식·천하람 의원안)

※ 적용기한: 2024. 12. 31.(박대출·김태년 의원안)
2025. 12. 31.(이병진·박성훈 의원안)
2026. 12. 31.(박수영·최은석 의원안)
2030. 12. 31.(이상식·천하람 의원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라 기업투자의 확대를 유인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동 제도가 한정된 기간 중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적용기한 연장이 정책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세제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됨

□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김태년·최민희·이인선·조승래·안도걸·천하람·신영대·김종양·정성호·정태호·김영진·박지혜·박성훈·박수민·허성무 의원안)

○ 관련 안건

- 현행 반도체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김태년·최민희·이인선·조승래·안도걸·천하람·신영대·김종양·정성호·정태호·김영진·박지혜·박성훈·박수민·허성무 의원안)

※ 기술분야: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추가(김태년 의원안, 최민희 의원안)
인공지능 추가(이인선·조승래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천하람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방위산업 추가(김종양 의원안)

2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관련 박성훈 의원안의 경우, 2025년 투자분에 대하여 기본공제율을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투자분에 대해서만 2%p 상향하여 적용

방위산업. 인공지능 추가(정성호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탄소중립산업 추가(김영진 의원안)
태양광, 풍력 추가(박지혜 의원안)
원자력 추가(박성훈 의원안)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박수민 의원안)
미래형 이동수단에 미래형 선박을 포함(허성무 의원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R&D 및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기술육성 정책과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도 제기됨

□ 출산장려금 지급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정일영·윤준병 의원안)

○ 관련 안건

-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장려금의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정일영·윤준병 의원안)
  ※ 공제율: 40%(정일영 의원안), 50%(윤준병 의원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여 근로자의 출산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해당 세액공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업규모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 여력의 차이로 인해 대기업 위주의 출산장려금 지급이 활성화되는 경우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간 실질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다자녀 가구 구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완화 및 감면한도 인상(안도걸·권칠승 의원안)

○ 관련 안건

- 다자녀 가구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감면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안도걸 의원안)
- 다자녀 가구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3명 이상인 양육자의 경우 감면한도 없이 전액 면제(권칠승 의원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셋째 아이부터는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자녀 가구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적용하는 다른 지원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전반적으로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대상 확대 및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김영환 의원안)

○ 관련 안건

-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세지출예산서 포함 항목의 대상을 세법에 규정된 모든 조세감면으로 확대하고, 조세지출결산서를 신설(김영환 의원안)

○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 조세지출에 대한 정기적 점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제도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부 록
- 확정된 2025년 총수입 예산 및 변경 내용

1 2025년 총수입

□ 2025년 총수입 예산은 651.6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24년 본예산(612.2조원)대비 39.3조원(6.4%)이 증가한 수준

○ 2025년 국세수입 예산은 382.4조원으로, 2024년 본예산(367.3조원) 대비 15.1조원(4.1%) 증가

- 2024년 법인실적 증가에 따라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세외수입 예산은 36.3조원으로, 2024년 본예산(28.2조원) 대비 8.1조원(28.8%) 증가

- 기획재정부의 ㈜NXC 주식 매각계획에 따른 국세물납주식매각대(전년 대비 +3.7조원) 및 국방부의 위례부지 매각에 따른 토지매각대(+0.7조원) 증가 등

○ 2025년 기금수입 예산은 232.8조원으로, 202년 본예산(216.7조원) 대비 16.1조원(7.4%) 증가

- 국민연금의 채권·주식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가(+7.2조원) 등

[부표 1] 확정된 2025년 총수입 예산

(단위: 조원)

	2023 실적	2024 본예산	2025 확정예산	2024 본예산 대비	
					(%)
총수입	573.9	612.2	651.6	39.3	6.4
국세수입	344.1	367.3	382.4	15.1	4.1
세외수입	28.5	28.2	36.3	8.1	28.8
기금수입	201.1	216.7	232.8	16.1	7.4
-사회보장기여금	88.9	92.3	96.5	4.2	4.5

자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정부안 대비 변경 내용

가. 총수입

□ 2025년 총수입은 651조 5,536억원으로 당초 정부안(651조 8,249억원)에서 2,713억원 감액

○ 국세수입은 382조 4,296억원으로 당초 정부안과 동일하지만, 세목별로는 차이가 발생

- 국회 의결과정에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의 수정에 따라 2조 1,249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나, 금년 국세수입의 부진한 실적 동향과 내년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규모(2조 1,249억원)의 세수 감소 전망을 반영

○ 세외수입은 36조 3,104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2,763억원 감액

- 우편 수요 감소를 반영한 우편사업 수입 감소 등 반영

○ 기금수입은 232조 8,13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50억원 증액

- 자산재평가(사립학교직원연금) 및 배당금 수취실적 증가(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반영

[부표 2] 2025년 총수입 변경 내용

(단위: 억원)

	2024	2025			증 감	
	본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예산	2024 본예산 대비	%
총수입	6,122,147	6,518,249	-2,713	6,515,536	393,389	6.4
국세수입	3,673,140	3,824,296	-	3,824,296	151,156	4.1
세외수입	281,959	365,867	-2,763	363,104	81,145	28.8
기금수입	2,167,048	2,328,086	50	2,328,137	161,089	7.4

자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국세수입

□ 2025년 국세수입은 382조 4,296억원으로 당초 정부안과 동일

○ 세목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증액된 반면, 소득세, 법인세 등은 감액

-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결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당초 정부안 대비 1.7조원 증액한 반면, 경제지표 전망 하향 등 내년 세입여건의 악화를 고려하여 소득세(△1.2조원), 법인세(△0.2조원), 부가가치세(△0.4조원) 등 감액

[부표 3] 2025년 국세수입 변경 내용

(단위: 억원)

	2024	2025			증 감	
	본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 예산	2024 본예산 대비	%
총국세	3,673,140	3,824,296	-	3,824,296	151,156	4.1
일반회계	3,561,182	3,718,050	-	3,718,050	156,868	4.4
○ 내국세	3,216,136	3,381,292	-	3,381,292	165,156	5.1
1. 소득세	1,257,605	1,280,066	-11,874	1,268,192	10,587	0.8
2. 법인세	776,649	885,013	-2,469	882,544	105,895	13.6
3. 상속세 및 증여세	146,566	127,879	17,180	145,059	-1,507	-1.0
4. 부가가치세	814,068	880,201	-3,813	876,388	62,320	7.7
5. 개별소비세	101,945	96,663	-	96,663	-5,282	-5.2
6. 증권거래세	53,829	38,454	-	38,454	-15,375	-28.6
7. 인지세	8,505	9,085	-249	8,836	331	3.9
8. 과년도수입	56,969	63,931	1,225	65,156	8,187	14.4
○ 교통·에너지·환경세	153,258	151,048	-	151,048	-2,210	-1.4
○ 관세	89,065	84,093	-	84,093	-4,972	-5.6
○ 교육세	61,625	60,402	-	60,402	-1,223	-2.0
○ 종합부동산세	41,098	41,215	-	41,215	117	0.3
특별회계	111,958	106,246	-	106,246	-5,712	-5.1
○ 주세	35,759	32,093	-	32,093	-3,666	-10.3
○ 농특세	76,199	74,153	-	74,153	-2,046	-2.7

자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 세외수입

□ 2025년 세외수입은 36조 3,104억원으로 당초 정부안(36조 5,867억원)에 비해 2,763억원 감액

○ 최근 우편 수요 감소 등을 감안하여 우편사업 수입(△2,598억원) 등 감액

[부표 4] 2025년 세외수입 변경 내용

(단위: 억원)

	2024	2025			증 감	
	본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 예산	2024 본예산 대비	%
세외수입	281,959	365,867	-2,763	363,104	81,145	28.8

자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라. 기금수입

□ 2025년 기금수입은 232조 8,13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232조 8,086억원)에 비해 50억원 증액

○ 보유토지의 자산재평가로 인한 사립학교직원연금 수입 증가(+30억원), 최근 배당금 수취실적 추이 등을 반영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수입 증가(+20억원) 등을 반영하여 증액

[부표 5] 2025년 기금수입 변경 내용

(단위: 억원)

	2024	2025			증 감	
	본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 예산	2024 본예산 대비	%
기금수입	2,167,048	2,328,086	50	2,328,137	161,089	7.4

자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발간일	2024년 12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tel 02·859·227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4744)

ISSN 3022-3032

© 국회예산정책처, 2024

국민을 지키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531-002055-10
ISSN	3022-303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